

세법연구 06-03

#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2006. 8

박명호 · 정희선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론	7
II. 조세지출의 개념과 측정방법	9
1. 조세지출의 개념	9
2. 조세지출의 측정방법	10
III. OECD 주요국의 조세지출 최근 현황	12
1. 호 주	12
가. 배 경	12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13
다. 조세지출의 정의	13
라. 조세 지출의 추계방법	14
2. 캐나다	21
가. 배 경	21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22
다. 조세지출의 정의	22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23
3. 독 일	33
가. 배 경	33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33
다. 조세지출의 정의	33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34
4. 영 국	35
가. 배 경	35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36
다. 조세지출의 정의	36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37
5. 미 국	42
가. 배 경	42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42
다. 조세지출의 정의	42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43
6. 일 본	49
<b>IV. 조세지출의 국가간 비교</b>	<b>53</b>
1.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규모	53
2. 주요 항목의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	55
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	61
4. 정 리	62
<b>V. 결론 및 시사점</b>	<b>65</b>
<b>참고문헌</b>	<b>67</b>

## 표목차

〈표 Ⅲ-1〉 호주의 조세지출 .....	15
〈표 Ⅲ-2〉 캐나다의 조세지출: 개인소득세 조세지출 .....	25
〈표 Ⅲ-3〉 캐나다의 조세지출: 법인세 조세지출 .....	28
〈표 Ⅲ-4〉 캐나다의 조세지출: GST 조세지출 .....	31
〈표 Ⅲ-5〉 독일의 조세지출: 산업별 조세감면제도 .....	34
〈표 Ⅲ-6〉 독일의 조세지출: 20대 조세감면제도(2004년도 기준) .....	35
〈표 Ⅲ-7〉 영국의 조세지출: 주요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	37
〈표 Ⅲ-8〉 영국의 조세지출: 주요 구조적인 조세감면 추정치 .....	39
〈표 Ⅲ-9〉 영국의 조세지출: 주요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요소를 모두 가진 조세감면 추정치 .....	40
〈표 Ⅲ-10〉 미국의 조세지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	44
〈표 Ⅲ-11〉 일본의 조세지출 .....	50
〈표 Ⅳ-1〉 호주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	53
〈표 Ⅳ-2〉 캐나다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	54
〈표 Ⅳ-3〉 독일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	54
〈표 Ⅳ-4〉 영국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	54
〈표 Ⅳ-5〉 미국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	54
〈표 Ⅳ-6〉 일본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	55
〈표 Ⅳ-7〉 호주의 20대 조세지출 .....	56
〈표 Ⅳ-8〉 캐나다의 20대 조세지출 .....	57
〈표 Ⅳ-9〉 영국의 20대 조세지출 .....	58
〈표 Ⅳ-10〉 미국의 20대 조세지출 .....	59
〈표 Ⅳ-11〉 일본의 20대 조세지출 .....	60
〈표 Ⅳ-12〉 호주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	61
〈표 Ⅳ-13〉 캐나다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	61

〈표 IV-14〉 영국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	62
〈표 IV-15〉 미국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	62
〈표 IV-16〉 일본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	62
〈표 IV-17〉 국가별 조세지출 보고서 비교 요약 .....	63
〈표 IV-18〉 조세지출보고서상 포함내용 요약 .....	64

# I.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은 주요 재정정책 수단 중의 하나로서 조세지출을 사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이라 함은 정부가 경제발전 촉진 및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정부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세수손실의 형태로 발생하여 그 규모나 대상이 명백히 노출되지 않는 간접적인 지출이다.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세지원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의 집중화,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파악하고, 의도한 정책목적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및 통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조세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조세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세지출을 예산과정에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체제 역시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에 일조하고 있다. 자유로운 국제교역 환경을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WTO는 정부보조금을 국제교역 왜곡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보조금 축소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내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세지출보고서를 1999년부터 작성하고 있다. 또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통과(2006.

4. 24)하여 2010년 시행예정인 국가재정법(안)을 보면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과 조세지출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법제화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기법과 현재의 조세지출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하고 국제적 수준에 걸맞도록 그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우리의 조세지출 정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선진화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조세지출의 일반적인 개념과 측정방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조세지출의 비교 분석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조세지출의 개념과 측정방법

### 1. 조세지출의 개념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이라 함은 국가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비과세·감면 등을 허용하여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모든 조세지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출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그 발전 과정도 다르며 또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방식 및 조세지출 추정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는 국제간 조세지출 규모의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이며 한 나라의 조세지출 추정치 및 그 합계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필요하게 한다.

이처럼 조세지출의 개념이 국가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OECD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조세제도(benchmark tax system)라 정의하고, 조세체계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때 조세지출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OECD 조사보고서, 1996)<sup>1)</sup>. 그리고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이라 정의된 기준조세제도에는 조세제도의 구조적인 요소인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및 과세기간과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 조세규약 등이 포함된다.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는 국가간에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각국은 조세지출이 대체적으로 다음의 5가지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첫째,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활동 및 과세계급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둘째, 조세지출은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도 성취할 수 있는 정책목적, 다시 말하면 조세 이외의 대체 정책수단이 존재하는 정책목적을 조세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셋째, 조세지출은 그 규모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기준조세제도

1) 하지만 각국은 기준조세제도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조세지출의 포괄 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다.

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한다. 넷째, 조세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지출이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조항이 동일한 조세제도 내에 없어야 한다<sup>2)</sup>.

한편,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세목은 조세지출의 개념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OECD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조세체계가 상이하지만 이들의 조세체계는 대체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자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와 세율이 넓은 간접세를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중심적으로 포함되지만 소매판매세, 부가가치세, 지출세, 재산세 및 부유세 등과 같이 세율이 넓은 세목에는 어떤 세목이든 조세지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 2. 조세지출의 측정방법

조세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준조세제도를 선정하며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조세지출 규모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세지출의 추정방법에는 세수손실법, 세수증가법, 직접지출등가법의 세 가지가 있다.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method)은 특정 비과세·감면 조항으로 인하여 기준조세제도와 비교하여 감소되는 세수의 규모를 사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당해 조항의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즉, 특혜를 부여하는 당해 조항이 없는 경우인 기준조세제도의 세수규모와 당해 조항이 적용된 때의 세수규모를 비교하여 전자와 후자의 차액을 조세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때 납세자의 행위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세수증가법(revenue gain method)은 특정 세제상의 특혜(tax concession)가 폐지되는 경우 증대되는 세수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세지출 규모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특정한 조세혜택의 폐지로 나타날 세수의 증대규모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감안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첫

2) OECD, *Tax Expenditure: Recent Experiences*, Paris, 1996.

째, 당해 조항의 폐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과세소득 규모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둘째, 경제의 전반적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쳐 세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관련 제품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쳐 세수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직접지출등가법(outlay equivalent approach)은 특정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세제상의 지원이 아닌 직접지출로 대체하는 경우에 수혜자에게 동등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직접지출의 규모로써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세수손실법과 세수증가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조세지출 규모가 기능별 예산의 분류와 부합되게 추정된다. 둘째는 개별규모를 합하여 총계를 산출하는 경우 그 총계가 경제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조세지출 규모를 직접지출과 같은 근거에서 추정함으로써 모든 조세지출이 직접지출에 의해 대체 가능하고 또 대체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는 점이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세수손실법을 조세지출의 규모추정에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추정결과의 불확실성과 계산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의 경우 1984년 이전까지는 세수증대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세수손실법에 의한 추정치와 함께 직접지출등가법을 사용한 추정치를 동시에 작성하고 있다.

한편, 조세지출을 추정하는 과정의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는 정부의 현금흐름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특정시기에 정부에 발생하는 세수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현재 현금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에서는 발생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 Ⅲ. OECD 주요국의 조세지출 최근 현황

본장에서는 OECD 주요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최근 조세지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상에 나타난 수치들을 이용하여 개별 조세지출 항목이나 총계의 시간에 따른 비교를 행할 때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추정방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전에 조세지출로 인식되지 않았던 항목이 새롭게 조세지출로 인식되는 경우, 수량화되지 못했던 항목들이 새롭게 수량화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세지출의 실제 규모의 변화와 상관없는 이유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본장에서는 각국의 조세지출 현황과 추이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세지출보고서 또는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배경, 보고서 또는 예산서의 구조, 조세지출의 정의, 추정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호 주

##### 가. 배경

호주의 『1980~1981 회계연도 예산서(Budget Statements)』를 보면, 조세지출 항목의 목록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호주 역사상 조세지출이 처음으로 기재된 공식문서이다. 조세지출이 공식문서로 기재되기 이전에도 호주의 재무부는 매년 예산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여 왔었다. 따라서 의회 역시 조세지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였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1981년에 처음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목록이 조세지출 규모와 함께 예산서에 부록으로 기재된 것이며 이는 1984~1985 회계연도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는 세부적

인 조세지출 추정치와 관련된 기준조세제도를 제공하는 별도 보고서인 『조세지출 보고서(The Tax Expenditures Statement)』가 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연간 조세지출보고서의 출판이 예산법령 헌장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정부의 예산보고에 있어 기본요소가 되고 있다.

호주의 조세지출보고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직접지출과 같이 조세지출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조세지출보고서는 정부 활동을 더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조세제도 내 각 요소의 적정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호주의 경제환경하에서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호주의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의 내용을 일단 세목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세목 아래에는 기능별 범주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이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포괄되어 있는 세목을 보면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급여과세, 자본이득세, 소비세가 있다. 그리고 각 세목 내 기능별 조세지출 항목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정치와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 추정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조세지출 항목만 열거하고 있다.

#### 다. 조세지출의 정의

정부는 경제활동의 촉진 또는 특정 단체, 개인, 사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상의 혜택을 베풀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지출은 특정 행위나 특정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감해 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세제상 특혜의 성격과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를 기준 조세(benchmark)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기준조세는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구성 요

소들로 이루어지며<sup>3)</sup>, 특정 행위나 특정 납세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한다. 한편, 조세지출은 기준조세로부터 벗어나서 특정 행위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모든 조세혜택이 조세지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조세혜택의 경우는 조세제도의 기본적 구조적 요소로서 간주되어 기준조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낮은 개인에게 낮은 세율을, 소득이 높은 개인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호주 조세제도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서 간주되어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는다.

조세지출의 형태는 비과세,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지출로 인해 특정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은 납세자간에 조세부담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호주에서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method)을 이용하여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실제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계산에 이용한다. 예를 들어, 소득에서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며, 납세 신고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호주 국세청의 개인소득세 모형자료를 이용한다.

호주의 조세지출보고서는 세수 인식에 있어 조세채무 방법(tax liability method)을 이용한 발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채무 방법에 의하면 조세채무를 (자진) 부과하는 시점과 해당 조세를 징수하는 시점 중 먼저 일어난 시점에서 조세수입을 인식한다.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에 의하면 경제 거래 기준(economic transaction method)을 적용하여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지만 조세수입의 관점에서 호주 정부는 조세채무 방법을 이용한 수익 예측이 더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I-1>은 호주의 2005년 조세지출 규모를 보여준다.

3) 조세제도의 어떤 요소가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판단은 개별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조세지출 규모의 비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표 III-1〉 호주의 조세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b>I. 개인소득세</b>				
<b>일반공공부문</b>				
선거비용 공제	2	3	2	2
비거주자, 방문객 등 소득세 감면	1	1	1	1
재외 직무에 대한 소득세 감면	370	450	430	470
Norfolk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및 의료비 감면	9	10	10	10
<b>국방</b>				
임시국방직을 위한 감면	30	30	30	30
국방군인을 위한 감면	33	38	25	25
국방군인 및 친지를 위한 의료비 감면	30	35	40	40
<b>교육</b>				
특정 장학금에 대한 공제	5	6	6	6
자기교육비 공제	(10)	(10)	(10)	(10)
<b>의료</b>				
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감면	340	360	390	390
의료비 환급	150	180	220	260
비거주자, 귀환자, 외국공무원을 위한 의료보험비용 공제	55	60	60	65
개인 건강보험료 등 환급에 대한 감면	590	680	740	740
개인 건강보험 미가입 고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험 추가징수	(95)	(115)	(145)	(180)
<b>사회보장 및 복지</b>				
출산비용 감면	0	0	0	80
<b>특정 납세자에 대한 특혜</b>				
부모부양공제	15	13	15	16
사회보장혜택 및 연금 수당 등의 수혜자에 대한 공제	940	1,020	1,140	1,290
연장자 공제	1,480	1,620	1,800	1,880
배우자, 부모, 간병인 등을 위한 공제	350	360	370	380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	410	410	400	670
<b>정부의 소득지원 지출에 대한 감면</b>				
특정 소득지원 혜택, 연금, 수당에 대한 감면	900	930	970	980
가족 세제 혜택에 대한 감면	1,800	1,710	2,520	2,330
주택임대 보조금에 대한 감면	13	13	13	13
육아혜택 감면	340	360	350	380
영아 보너스 감면	0	7	19	30
전쟁 관련 지급금 및 연금에 대한 감면	380	410	420	440

〈표 III-1〉의 계속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b>주택 및 공공시설</b>				
지역환급	175	180	185	190
최초 주택소유자 수여 제도하의 지급금 감면	330	450	290	250
<b>휴양 및 문화</b>				
작가, 발명가, 행위예술가, 운동가를 위한 공제	8	8	8	9
<b>기타 경제분야</b>				
특정 광부에 대한 증가세율 적용 등	(15)	(14)	(15)	(15)
<b>기타</b>				
소득 정산에 의한 환급	3	3	5	4
특정 수혜자에 대한 증여 세액공제	440	480	560	630
소액자산 즉시상각의제	3	3	3	3
개인적 상해에 대한 사후 보상금 등 감면	2	3	5	6
<b>II. 법인소득세</b>				
<b>일반공공부문</b>				
국제 보증금 조성을 위한 지출금 감면	0	0	0	2
<b>의료</b>				
지정 의료혜택 단체에 대한 소득세 감면	220	30	45	105
공공 비영리 병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1	1	1
<b>사회보장 및 복지</b>				
종교, 과학, 자선 및 공공 교육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3	3	3
광산탐사 지원금에 대한 세금 혜택	1	1	1	1
생명보험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2	2	2	2
<b>특정 납세자를 위한 세금 혜택</b>				
특정 외환손익에 대한 감면	2	2	2	2
장외 주식환매	15	15	195	530
<b>휴양 및 문화</b>				
특정 비영리단체를 위한 소득세 감면	15	15	10	15
특정 진흥 및 발전 비영리단체를 위한 소득세 감면	25	25	25	25
영화산업의 환급 세액 감면	0	1	3	15
<b>기타 경제분야</b>				
무역협회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	10	10	10
발전기금에 대한 세금혜택	6	6	6	7
자본으로 분류되는 연구 부채에 대한 세금혜택	2	2	2	2
연구개발비 환급세액에 대한 감면	40	60	30	(10)
<b>자본적 지출 등</b>				
영화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3	2	0

〈표 III-1〉의 계속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수장비에 대해 3년 감가 상각	20	25	25	25
전화, 전기 설치관련 비용 공제	8	8	8	8
원예식물에 대한 세액 상각	4	5	5	5
포도작물에 대한 가속상각	7	8	10	10
발전수당	220	115	60	35
광업, 채석 및 석유탐사에 대한 자본적 지출 공제	30	30	20	20
특허, 저작권에 대한 공제	30	0	0	0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공제	5	11	10	9
공장 및 장비에 대한 가속상각 총당금	620	(200)	(680)	(850)
채광건물에 대한 가속상각	450	400	360	310
무역선적에 대한 가속상각	(25)	(17)	(14)	(11)
내용연수 상한 법령 등	2	2	2	132
저가품에 대한 묶음 상각	50	80	100	100
간소화된 세제	10	420	420	250
중소기업에 대해 가속상각 등 혜택 폐지	470	(260)	(90)	(60)
연구개발비 세금혜택	500	415	530	545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속상각	348	308	228	53
<b>선급비용</b>				
선급비용 세액공제 혜택 폐지 등	(208)	(163)	(173)	2
<b>국제</b>				
특정 국제기구에 대한 세액 감면	2	2	2	2
해외 자선단체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원천징수세액 감면	2	2	2	2
조세조약에 의한 간주세액공제	10	15	5	0
해외지점이익 세액공제	2	2	2	2
자국내 특정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공제	1	1	1	1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혜택	45	45	50	75
발전기금으로 지불된 해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 감면	1	1	1	1
과소자본세제 배제	1	1	1	1
비포트폴리오 배당수익에 대한 세액감면	60	50	60	80
해외 지배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2	2	2
이전신탁에 대한 세액감면	2	2	2	2
공모사채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감면	750	700	560	470
<b>농업, 임업, 수산업</b>				
농업 등 종사자에 대해 평균소득의 세율 적용	260	230	145	120
농장 운영 저축	150	410	250	95
자연증가된 가축에 대한 평가	190	85	105	150
설탕산업 장려금에 대한 세액감면	0	0	0	2

〈표 III-1〉의 계속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b>제조업 및 광업</b>				
인프라 구축을 위한 채권 등	45	40	45	35
<b>기타</b>				
비상업용 사업손실에 대한 세액감면	150	90	100	105
특정 협력기업에 대한 공제	1	1	1	1
특정 생명보험운영비에 대한 세액감면	270	200	200	200
주립단체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4	4	4
시 및 지방단체에 대한 세액감면	280	370	450	460
<b>III. 퇴직제도</b>				
<b>사회보장 및 복지</b>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11,140	10,395	14,000	14,405
퇴직위로금에 대한 공제	410	350	340	340
미사용 휴가비 지급 등에 대한 세금혜택	230	210	190	175
1978년까지 축적된 휴가비 등에 대해 감소된 세율 적용	115	100	85	75
퇴직시 소규모 기업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세 감면	55	85	120	185
<b>기타 경제 부문</b>				
15년 연속 중소기업 사용 자산 매각시 자본이득세액감면	5	10	16	13
<b>IV. 부가급여 과세</b>				
<b>일반공공 부문</b>				
특정 국제단체 급부에 대한 세액감면	1	1	1	1
<b>국방</b>				
국방서비스 법령에 의한 특정 급부에 대한 감면	1	1	1	1
군인 의료혜택에 대한 감면	3	3	3	3
<b>교육</b>				
해외근무 고용인 자녀 교육비 세제 혜택	1	1	1	1
<b>의료</b>				
특정 공공 비영리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130	200	220	230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해외여행시 의료비 감면	1	1	1	1
<b>사회보장 및 복지</b>				
안전 상금 관련 감면	1	1	1	1
사내 휴양 및 육아 시설에 대한 공제	2	2	2	2
육아 시설에 대한 투자 감면	1	1	1	1
공공 자선단체에 대한 감면	230	165	210	240
노인 및 장애인 간병인에 대한 숙박, 연료, 식대 감면	1	1	1	1
긴급 보조에 대한 감면	1	1	1	1

〈표 III-1〉의 계속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b>주택 및 공공시설</b>				
외딴지역 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70	80	80	85
특정 지방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 세액감면	2	2	2	2
<b>기타 경제 부문</b>				
항공사 및 여행사 직원을 위한 대기자 여행 할인을 적용	45	20	25	25
15년 이상 장기 근로에 대한 상급 감면	1	1	1	1
국가운영 근로자 교육 혜택에 대한 감면	1	1	1	1
특정 이직 및 채용 비용 감면	4	4	4	4
급여성 복지, 건강, 카운슬링 및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세액감면	2	2	2	2
차량 관련 비용 공제	1,012	1,042	1,084	1,114
<b>교통 및 통신</b>				
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통근비용 지원 감면	60	60	65	65
근로자의 택시비 세액감면	7	7	7	7
<b>기타</b>				
비영리, 비정부 기관에 대한 일부 리베이트	15	25	30	30
특별 휴가 관련 보조금 감면	1	1	1	1
종교종사자에 대한 특정 부가급여 감면	177	182	187	187
근로자에 대한 항공료 부가급여 등에 대한 감면	2	2	2	2
차량관련 부가급여에 대한 세제 혜택	17	21	22	23
외딴지역 근로자의 휴가비, 숙박, 음식 등에 대한 공제	3	3	3	3
기타 소액 부가급여에 대한 감면	2	2	2	2
사업용 자산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감면	3	3	3	3
질병 퇴치 자선단체에 대한 감면	5	8	13	16
특정 노동자 기금 기부에 대한 감면	0	0	0	220
이주 컨설팅 비용 감면	1	1	1	1
업무용 자산에 대한 공제	170	190	220	240
특정 근로자 숙식대에 대해 세금 혜택	14	12	12	12
<b>V. 자본이득세</b>				
<b>주택 및 공공시설</b>				
개인의 주된 거주지 매각시 자본이득 감면	4	4	4	4
<b>휴양 및 문화</b>				
문화적 유증 및 증여프로그램에 의해 처분시 자본이득세 감면	1	1	1	1
<b>기타 경제 부문</b>				
근로자 자격 기금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이연	2	2	2	2
벤처 캐피탈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자본이득세 혜택	0	0	1	6
재경 서비스를 위한 자본이득 과세이연	0	2	2	2

## 〈표 III-1〉의 계속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이혼으로 인한 자산 양도에 대해 자본이득 과세이연	2	2	2	2
외국기업의 비포트폴리오 이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2	2	2	2
벤처캐피탈의 특정 해외투자자에 대한 감면	0	0	20	25
중소기업의 자산 매각시 자본이득세 50% 감면	130	160	220	300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이득 과세이연	40	75	85	125
개인 및 신탁을 위한 자본이득세 할인	2,130	2,740	2,920	4,260
기업간 이자 교환으로 인한 자본이득 과세이연	120	195	(1)	4
상장 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 할인	5	20	20	20
분할에 대한 자본이득세 혜택	3	3	3	3
특정 재정 기구를 위한 세금 혜택	0	2	2	2
퇴직단체를 위한 자본이득 과세이연	1	1	1	1
<b>VI. 소비세</b>				
<b>연료</b>				
고유황 디젤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	0	0	(165)	(180)
연료 석유 등에 대한 소비세	(60)	(65)	(90)	(85)
항공 가솔린 및 터빈 연료에 특별 세율 적용	770	740	745	765
대체 연료에 대한 면세	530	620	570	600
<b>담배</b>				
0.8그램 이하의 담배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	(1,220)	(1,310)	(1,305)	(1,325)
<b>알코올</b>				
도수가 낮은 맥주 등에 대한 세금 혜택	40	95	95	50
와인에 대한 세금 혜택	24	26	26	89
브랜드에 대한 특별세율	5	5	5	5
<b>자동차</b>				
고급차량 과세	(220)	(260)	(335)	(300)
<b>일반소비세</b>				
외교관을 위한 특정 감면	5	5	6	7
군함에 대한 특정 감면	2	2	2	2
<b>VII. 천연자원 과세</b>				
<b>제조업 및 광업</b>				
지정지역에서 석유 탐사비용 공제	1	1	1	1
<b>석유</b>				
응축액에 대한 비과세	150	180	150	330
<b>합계</b>	<b>30,600</b>	<b>29,755</b>	<b>33,953</b>	<b>36,958</b>

자료: Tax Expenditures Statement, 6.2 Income tax benchmark, 6.3 Commodity tax benchmark의 표

## 2. 캐나다

### 가. 배경

1970년대 캐나다 경제는 물가상승과 고용축소 등을 겪으면서 세출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법정교부금의 증대,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대, 그리고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수의 감소 등으로 재원부족 현상을 경험하여야 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조세지원에 있어 직접지출 대신 조세지출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조세지출을 확대한 결과 국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해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조세지출을 억제하고 행정각부의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 국가정책 우선순위와 예산편성을 연계시키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산제도의 도입 결과 캐나다는 1979년 『캐나다 조세지출예산(Government of Canada Tax Expenditure Account)』을 발간하며 연방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추정치를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이 자료는 1976년과 1979년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그리고 소비세에 대한 연방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소득세 체계의 개편 등 전반적인 세제개혁에 따라 많은 조세지출이 축소, 폐지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88년의 세제개혁이다. 1988년의 조세개혁에서는 많은 조세지출이 축소, 폐지되었으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로부터 세액공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세제개혁의 두 번째 국면은 제조업 판매세를 소비세(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대체한 것인데, 이 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1992년 12월 세제개혁 후 첫 보고서인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조세지출(Government of Canada Personal Income Tax Expenditure)』이 발행되어 1988, 1989년의 추정치가 발표되었으며, 1993년에는 법인소득세의 조세지출에 관한 자료를 수록한 보고서가, 1994년에는 GST에 관한 조세지출 자료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치는 우선 세목별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그리고 소비세로 구분되며 각 세목 내에서는 개별 조세지원 항목이 기능별 범주에 따라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개인소득세 조세지출은 자선 및 기부, 문화, 교육, 근로, 가정, 농수산업, 정부/지방정부 금융서비스, 일반투자, 보건, 노후보장, 기타, 비망항목의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소득세 조세지출은 자선 및 기부, 문화, 연방 지역, 일반사업 및 투자, 중소기업, 국제, 부문별 측정, 기타 등의 기능으로 구분되며, 소비세에 대한 조세지출은 원주민 자체 정부, 사업, 자선 및 비영리 단체, 교육, 의료, 가족, 주거, 시 등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별 범주로의 구분을 통해 특정조항의 정책적 정당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며, 모든 조세지원 조치가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지출로 간주되지 않는 세제상 조치 역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비망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비망항목 내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추정치가 없는 항목 역시 조세제도상 지원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 다. 조세지출의 정의

캐나다에서 기준조세(benchmark)라 함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의 각 세목에 대해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조세구조를 일컫는다. 그리고 조세지출은 이러한 기준조세에서 변형된 것으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기준조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 공제가 특정 개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기도 해 그 분류를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조세지출은 구체적으로 특별세율, 비과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감면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정부의 세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각 세목별 기준조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소득세

캐나다에서 개인소득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현행세율과 과세 구간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과세단위는 개인이다. 셋째, 과세는 역년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과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배당 그로스업이나 배당세액공제와 같이 이중과세를 경감 또는 제거하는 것 및 수익대응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구조적 측정치로서 기준조세에 포함된다.

### 2) 법인소득세

캐나다에서 법인소득세 기준의 본질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일반세율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과세단위는 법인이다. 셋째, 과세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행해진다. 넷째, 과세는 명목소득 기준이다. 그리고 법인간 배당의 비과세와 같이 이중과세를 경감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 및 수익대응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전체 조세체계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기준조세에 포함된다. 또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헌법상 납세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 역시 기준조세에 포함된다.

### 3) 소비세(GST)

소비세 기준의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체계는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다단계 부가가치체계이다. 둘째, 목적지 기준을 채택하여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에만 과세된다. 셋째, 세율은 7%이며 역년 기준으로 과세된다. 넷째,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는 서로간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헌법조항을 기준으로 간주한다.

##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조세지출보고서에 나타난 추정치는 모든 다른 요소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조세

지원의 존재에 따라 감소한 연방세입의 감소액을 나타낸다. 반면, 해당 조세지원과 관련 있는 지방정부 조세지출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세지출 추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지원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연방세입이 계산되며 이 계산 값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조세지출의 추정치로 제시된다. 이 때 모든 다른 조항은 불변이라는 가정은 납세자의 가능한 행태 변화,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 또는 특정 조세지원의 폐지로 인한 거시경제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른 세입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지출 추정치로 계산된 값은 각 조치가 정부세입에 미치는 현금흐름의 추정치이며, 특정연도에 줄어든 세입의 양을 가리킨다. 따라서 추정된 값이 조세지출과 관련된 장기적 또는 정상상태의 세입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이연의 경우 그 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많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금을 현 시점에서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소득세 이연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현금흐름기준을 이용하여 당해연도의 순이연금액을 세입감소분으로 계산하고 있다. 즉, 당해연도의 공제액에서 전년도 이연분 중 당해연도에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세지출 추정치로 계산한다.

개인소득세 조세지출은 대부분 개인소득세 모형으로 계산되며 추정치는 통계적 표본 납세신고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소득세체계 내에서 조세지원 항목의 폐지라는 변화를 모의실험함으로써 도출된다.

법인소득세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을 위해서는 법인세 모형이 이용된다. 법인세 모형 역시 재무부가 수집한 표본 납세신고자료를 이용하며, 법인이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재계산한다.

소득세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없는 조세지출은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원천에서 구해진 보완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가령, 소비세(GST) 조세지출의 대다수는 투입산출표와 캐나다 통계청이 마련한 국민계정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표 III-2〉 캐나다의 조세지출: 개인소득세 조세지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b>자선 및 기부</b>					
기부금 공제	1,490	1,580	1,605	1,635	1,670
상장주 기부 및 생태보호지역 발생 자본이득 감면을 적용	6	3	6	6	7
문화자산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6	3	13	9	7
증여 및 유증에 대한 감면	n.a.	n.a.	n.a.	n.a.	n.a.
정치적 기부에 대한 공제	8	9	11	11	15
<b>문화</b>					
예술가를 위한 공제	n.a.	n.a.	n.a.	n.a.	n.a.
예술가 및 음악가를 위한 공제	n.a.	n.a.	n.a.	n.a.	n.a.
<b>교육</b>					
성인기초 교육 공제	0	10	5	5	5
차량기계공 연장비 공제	0	10	10	10	10
교육비 공제	260	250	260	275	280
학원비 공제	275	275	295	305	320
전기 이월된 교육비 및 학원비 공제	170	245	250	255	255
교육 및 학원 이적 공제	390	420	435	450	460
장학금, 특별연구원 연구비, 장려금에 대한 부분 감면	21	22	22	22	23
등기 교육저축플랜	95	120	120	135	135
학생 대출이자 공제	66	60	62	63	64
<b>근로</b>					
군인, 경찰을 위한 공제 혜택	0	0	0	30	30
주택이사를 위한 공제	S	S	S	S	S
휴가, 안식일 급여 유예	n.a.	n.a.	n.a.	n.a.	n.a.
종업원 복지 플랜	n.a.	n.a.	n.a.	n.a.	n.a.
근로자 주식옵션	650	415	480	400	350
비급여 고용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파업급여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복부 주민을 위한 공제	125	130	130	130	135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57	62	62	63	64
긴급 서비스 지원자에 대한 감면 혜택	14	14	14	14	14
<b>가정</b>					
입양 비용 공제	0	0	0	0	5
캐나다 어린이 세금 혜택	7,370	7,755	7,985	8,650	9,210
보모 공제	57	65	65	70	70
배우자 등에게의 양도에 대한 세금 이월	n.a.	n.a.	n.a.	n.a.	n.a.

〈표 III-2〉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부양가족 세액공제	6	6	6	6	6
배우자 공제	1,160	1,180	1,210	1,275	1,315
환급가능 부양자 세액공제	610	630	645	665	680
<b>농수산업</b>					
50만달러 한도의 농지의 자산소득	215	255	240	245	255
현금주의 회계	n.a.	n.a.	n.a.	n.a.	n.a.
가족농장 등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자본이득세 이월	n.a.	n.a.	n.a.	n.a.	n.a.
축산물 청산소득 이월	3	S	S	9	(9)
장마시 축산물 판매소득 이월	n.a.	n.a.	n.a.	n.a.	n.a.
농작물 판매소득에 대한 특별 차기회계연도 이월	(26)	21	S	S	11
10년간 자본이득세 유보	S	S	S	S	S
분기별 세금 납부에 대한 공제	n.a.	n.a.	n.a.	n.a.	n.a.
재고자산 회계에서의 융통성	n.a.	n.a.	n.a.	n.a.	n.a.
정부 기부에 대한 세금 이월	66	170	45	0	0
보너스 및 이자수익 세금 이월	31	26	23	22	7
과세되는 인출	(76)	(105)	(100)	(185)	(160)
<b>정부/지방정부 금융서비스</b>					
별목에 대한 세액공제	S	S	S	S	S
Quebec Abatement	2,965	3,050	3,195	3,270	3,475
지방으로 소득이전	13,555	13,585	14,145	14,530	15,435
<b>일반 투자</b>					
외환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혜택	n.a.	n.a.	n.a.	n.a.	n.a.
사적사용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혜택	n.a.	n.a.	n.a.	n.a.	n.a.
증가된 자본금 공제	n.a.	n.a.	n.a.	n.a.	n.a.
전문가에 의한 조서기준 회계처리에 대해 과세이연	n.a.	n.a.	n.a.	n.a.	n.a.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n.a.	n.a.	n.a.	n.a.	n.a.
5년간 소득이월	20	31	32	32	33
투자세액공제	33	36	33	34	35
광물탐사 세액공제	12	25	45	59	56
자산소득의 일부 비과세	1,985	1,665	2,120	2,150	2,195
자본이득에 대해 실현시 과세	n.a.	n.a.	n.a.	n.a.	n.a.
(중소기업)					
소기업지분 자산이득에 대한 공제(50만달러 한도)	345	305	310	315	320
사업투자손실 공제	44	48	49	50	51
10년간 자본이득 유보에 대해 과세이연	S	S	S	S	S
벤처캐피탈 공제	215	180	160	200	200
소기업의 반복 투자	6	3	4	4	4

〈표 III-2〉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b>보건</b>					
장애아 혜택	0	0	15	40	50
장애자 세액공제	330	350	370	380	465
의료비 공제	570	635	700	765	820
고용자가 지불한 의료보험금에 대한 비과세	1,710	1,875	2,060	2,240	2,430
환급되는 의료비 보충	55	64	70	75	85
<b>노후보장</b>					
노령자 공제	1,320	1,355	1,400	1,460	1,515
이익분배제도의 과세이연	n.a.	n.a.	n.a.	n.a.	n.a.
상해 보상금 비과세	15	15	17	17	18
보장연금에 대한 비과세	265	265	290	285	300
생명보험 정책에 의한 투자이익 비과세	n.a.	n.a.	n.a.	n.a.	n.a.
상해, 사망 등에 대한 연금 및 수당 비과세	n.a.	n.a.	n.a.	n.a.	n.a.
사회보장비에 대한 비과세	245	225	220	205	200
사망 보조금에 대해 10,000달러 한도 비과세	n.a.	n.a.	n.a.	n.a.	n.a.
보훈연금에 대한 비과세	5	4	3	3	3
국가보훈자 또는 그들의 부양가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135	140	150	155	165
보훈상금에 대한 비과세	0	0	0	0	0
근로자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과세	650	700	745	760	800
근로자 연금에 대한 비과세	405	415	425	435	445
허가된 연금 플랜	940	(1,010)	11,695	11,090	11,540
허가된 퇴직연금 플랜	4,040	2,425	8,475	7,295	7,720
Saskatchewan 연금 플랜	S	S	S	S	S
이혼수당	115	115	115	110	110
<b>기타</b>					
영구 빈곤에 대한 공제	S	S	S	S	S
성직자 공제	67	74	75	75	77
내국인의 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포함 세율	885	1,405	1,835	2,335	2,385
전체포함 세율	1,770	2,810	3,665	4,670	4,770
정부관청으로부터 소득에 대한 비과세	S	S	S	S	S
보호구역내 인디언 소득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특정 소급 과세	S	S	S	S	S
<b>비망항목</b>					
(이중과세 회피)					
배당세액공제	1,215	1,260	1,310	1,365	1,420

〈표 III-2〉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외국납부세액공제	635	665	675	685	695
자본배당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수익 대응 비용)					
자녀부양비에 대한 공제	530	535	535	535	545
이전소득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	825	730	735	745	855
회비 공제	550	575	605	610	630
장애지원 공제	S	S	S	15	20
이사비용 공제	81	88	91	92	95
(손실 상계 조항)					
자본손실 이월	86	91	150	125	100
농수산업 손실 이월	16	15	12	12	13
비자산손실 이월	78	82	85	85	88
캐나다 및 퀘벡 연금 플랜					
-근로자 납부분 공제	1,980	2,245	2,460	2,535	2,625
-고용주 납부 프리미엄 비과세	2,160	2,140	2,100	1,985	2,005
(기타)					
기본 인적공제	20,460	21,085	21,715	22,650	23,370
시간제 농부를 위한 농업손실 공제	60	61	52	53	56
기타 고용비용 공제	735	775	810	820	845
자원 연관 지출 공제	155	175	245	300	325
복권 및 도박 상급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특정 사고 비용에 대한 비과세	0	0	0	0	0
해외근무 공무원에 대한 비과세	9	10	10	10	10
급식 및 오락비에 대한 공제	85	72	73	73	75
<b>합계</b>	<b>75,411</b>	<b>75,025</b>	<b>97,980</b>	<b>100,309</b>	<b>104,708</b>

주: "S"는 조세비용이 2.5백만달러 이하임을 뜻하고, "n.a."는 숫자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을, "-"는 해당 조세지출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05*, Table 1

〈표 III-3〉 캐나다의 조세지출: 법인세 조세지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b>자선 및 기부</b>					
기부금 공제	410	270	290	320	340
문화자산 및 생태지역의 기부에 대한 공제	12	27	9	9	9
왕실에 대한 기부 공제	S	S	S	S	S
등록 자선단체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과세	185	175	160	150	145
정치적 기부에 대한 공제	S	S	S	S	S
<b>문화</b>					
영화 및 비디오 산업을 위한 세액공제	175	185	195	205	215
외국 미디어의 광고비용에 대한 과세	n.a.	n.a.	n.a.	n.a.	n.a.
<b>연방 지역</b>					
지역 및 시 기업에 대한 소득세 공제	n.a.	n.a.	n.a.	n.a.	n.a.
지방으로 소득세 이전	1,145	1,065	1,210	1,375	1,480
별목세액공제	17	23	18	19	20
<b>일반 사업 및 투자</b>					
자본 및 자원 관련 지출에 대한 가속 상각	n.a.	n.a.	n.a.	n.a.	n.a.
자본이득에 대한 이연	n.a.	n.a.	n.a.	n.a.	n.a.
자본이득에 대해 실현시 과세	n.a.	n.a.	n.a.	n.a.	n.a.
자본이득에 대한 부분 과세	4,095	1,990	2,010	2,045	2,125
광고비에 대한 비용처리	63	40	40	40	40
대서양 투자세액공제	343	316	313	323	334
과학적 연구 및 실험적 개발 투자세액공제	2,321	2,378	2,435	2,487	2,549
사용가능 전 자본자산의 상각	n.a.	n.a.	n.a.	n.a.	n.a.
<b>중소기업</b>					
사업투자손실의 공제	28	26	25	23	23
중소기업 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0	0	0	0	0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3,185	3,220	3,040	3,010	3,040
중소기업에 대한 가속 세율 감소	50	65	35	5	0
중소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 비과세	n.a.	n.a.	n.a.	n.a.	n.a.
<b>국제</b>					
비거주자 해외 항만 및 항공 소득 비과세	n.a.	n.a.	n.a.	n.a.	n.a.
국제 금융중심지에 대한 감면	n.a.	n.a.	n.a.	n.a.	n.a.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감면					
-배당	275	275	255	265	395
-이자	790	640	705	600	640

〈표 III-3〉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임차료 및 로열티	112	111	112	115	122
-매니지먼트 수수료	42	44	49	50	53
-부동산 및 신탁 수익	11	21	6	14	14
생명보험 회사의 국제 소득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소득 비과세	n.a.	n.a.	n.a.	n.a.	n.a.
<b>부문별 측정</b>					
(농업)					
현금주의 회계	n.a.	n.a.	n.a.	n.a.	n.a.
축산물 청산소득 이월	S	S	S	5	3
현금구매티켓으로 판 곡물에 대한 소득이연	(15)	15	S	S	S
재고자산 회계에서의 유연성	n.a.	n.a.	n.a.	n.a.	n.a.
농업협조	0	0	0	0	0
(자원)					
기업 미네랄 탐사 세액공제	0	0	26	32	58
특정 환경신탁에 대한 기부 공제	S	S	S	S	S
감모	43	21	34	37	39
자원보조금 효과 및 황실 특권 및 광산세에 대한 비공제	295	435	595	615	640
자원소득에 대한 세율	(60)	(215)	(395)	(575)	(515)
알베르타 특권 세액공제	0	0	S	S	S
(기타부문)					
교통, 통신 및 채광기업에 대한 지점세 공제	n.a.	n.a.	n.a.	n.a.	n.a.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	80	75	120	125	130
신용단체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75	79	69	65	70
제조 및 가공 수당	1,380	1,060	640	115	0
담배 제조업자의 이익에 대한 부가세	(80)	(75)	(75)	(75)	(75)
대형 저축기관의 자본금에 대한 일시 세액	0	0	0	0	0
<b>기타 측정</b>					
상세 및 반덤핑 관세에 대한 공제	n.a.	n.a.	n.a.	n.a.	n.a.
지진 보류지에 대한 공제	7	5	5	5	5
전문기업에 의한 회계처리 공제	n.a.	n.a.	n.a.	n.a.	n.a.
건설업자에 대해 진행률별 지급에 대한 보류	25	40	40	40	40
생명보험 정책 이자	66	68	76	78	81
특정 연방 황실 기업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b>비망항목</b>					
(개인 및 기업 소득세 통합을 위한 구조)					
투자기업 공제	S	S	S	S	5

〈표 III-3〉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자기업 및 상호 펀드 기업에 대해 자본이득 환불	520	35	60	305	320
사기업 투자 소득에 대해 세액 환급	1,385	1,220	595	470	320
(수익 대응 비용)					
무형자산 공제	n.a.	n.a.	n.a.	n.a.	n.a.
합성원유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 로열티 공제	n.a.	n.a.	n.a.	n.a.	0
(손실 상계 조항)					
자본손실 이월	865	960	385	330	300
농업 및 수산업 손실 이월	18	19	19	19	19
비자본 손실 이월	6,320	5,015	5,170	5,265	5,205
(기타)					
항공연료세 환급	0	0	0	0	0
비거주자 소유 투자기업 환급	280	415	125	0	0
급식 및 오락비용에 대한 부분 공제	340	345	340	340	355
후원 배당소득 공제	240	390	365	385	410
<b>합계</b>	<b>25,043</b>	<b>20,778</b>	<b>19,101</b>	<b>18,636</b>	<b>18,954</b>

주: "S"는 조세비용이 2.5백만달러 이하임을 뜻하고, "n.a."는 숫자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을, "-"는 해당 조세지출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05*, Table 2

〈표 III-4〉 캐나다의 조세지출: GST 조세지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b>원주민 자체 정부</b>					
원주민 자체 정부에 대한 환급	S	S	S	S	S
<b>사업</b>					
국내 재정 서비스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통행료에 대한 비과세	S	S	S	S	S
법적 부조 서비스에 대한 비과세 및 환급	25	25	25	30	30
특정 수입품에 대한 비과세	n.a.	n.a.	n.a.	n.a.	n.a.
해외 방문객을 위한 환급	85	85	65	75	75
소규모 상인을 위한 과세	160	170	175	190	200
농수산물에 대한 영세율	S	S	S	S	S
특정 수출업자 구매에 대한 영세율	S	S	S	S	S
<b>자선 및 비영리 단체</b>					
비영리단체의 공급에 대한 감면	n.a.	n.a.	n.a.	n.a.	n.a.

〈표 III-4〉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환급	240	250	265	280	295
비영리단체에 대한 환급	60	60	65	70	70
<b>교육</b>					
교육 서비스비용에 대한 비과세	375	400	435	460	485
특정 공익단체 구입 도서에 대한 환급	40	40	40	45	50
단과대학에 대한 환급	80	85	85	90	95
학교에 대한 환급	375	380	380	395	415
종합대학에 대한 환급	180	205	240	255	265
<b>의료</b>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감면	535	570	630	655	695
병원에 대한 환급	390	395	425	445	505
의료장치에 대한 영세율	140	150	160	170	175
제조약에 대한 영세율	500	545	585	615	645
<b>가족</b>					
육아 등 서비스에 대한 공제	135	135	135	140	150
GST/HST 공제	3,005	3,070	3,180	3,310	3,420
기초 식료품에 대한 영세율	3,415	3,565	3,700	3,880	4,090
<b>주거</b>					
거주 주택 및 기타 개인 사용 목적 부동산 매각 공제	n.a.	n.a.	n.a.	n.a.	n.a.
거주목적 임차에 대한 공제	1,280	1,320	1,375	1,430	1,510
새집에 대한 환급	640	790	845	970	1,015
새 거주용 임차자산에 대한 환급시	40	45	50	55	60
시내 운송에 대한 공제	95	105	105	110	115
수도 및 오물수거 서비스에 대한 공제	150	160	165	175	180
시당국에 대한 환급	700	725	805	1,475	1,540
<b>비망항목</b>					
근로자 및 사원에 대한 환급	105	110	110	110	110
환급주의 회계에 대한 공제	200	205	220	230	245
급식 및 오락 비용에 대한 부분 공제	120	125	130	140	145
<b>합계</b>	13,070	13,715	14,395	15,800	16,580

주: "S"는 조세비용이 2.5백만달러 이하임을 뜻하고, "n.a."는 숫자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을, "-"는 해당 조세지출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05*, Table3

### 3. 독일

#### 가. 배경

독일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예산상의 직접보조금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1959년 독일 재무부는 의회의 요청에 의해 예산상의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조세지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지칭하며 조세지원에 따른 세수손실의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세지출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1967년인데 이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률」 제12편에서 ‘연방정부는 간접보조금과 조세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에 예산추정치의 일부로서 2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조세지출보고서가 1967년에 제출되었으며 보조금보고서라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제출되고 있다.

####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독일 연방정부의 보조금보고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와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규정, 순부유세, 영업세, 회사세, 이전세, 보험세, 자동차세, 소비세, 도박 및 복권세, 재산세, 유산세 등 모든 세목을 망라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지방소비세와 중요하지 않은 지출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조세지출은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농림업, 산업, 교통, 주택 및 도시개발, 저축증진과 기타로 구분된다. 여기서 산업은 다시 광업, 에너지 및 원재료, 기술혁신, 특정산업지원, 지역개발 그리고 산업일반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문별 구분 내에 세목에 따른 구분이 행해지고 있다.

#### 다. 조세지출의 정의

보조금보고서는 어떤 보조금이 기업과 산업부문을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우대하

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개별 조세지원의 경우 지출 측면에서의 직접지원과 같이 그것이 보조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세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많을수록 그 조세지원은 보고서에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독일에서는 여섯 번째 보조금보고서(2003년에 열아홉 번째 보고서가 발간됨) 이후 조세지원은 직접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대체로 세입손실액은 12개월에 걸친 조세지원의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조세지원이 폐지되거나 한시적일 때의 추가적인 수입은 해당 회계연도 수입으로 처리된다.

세입손실액 추정치는 조세통계, 행정당국이 고유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산서, 소득세 및 법인세 모형, 국민계정자료에 의존하여 계산된다.

〈표 III-5〉 독일의 조세지출: 산업별 조세감면제도

(단위: 백만유로)

	2001		2002		2003		2004	
	총액	연방	총액	연방	총액	연방	총액	연방
<b>I. 소비자 보호, 식품 및 농업</b>	289	102	505	325	636	451	696	511
<b>II. 산업(운송업 비포함)</b>								
1. 광업	33	14	27	11	25	11	25	11
2.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자원 공급	1	1	1	1	1	1	1	1
3. 기술혁신	0	0	0	0	0	0	0	0
4. 특정산업 지원	0	0	0	0	0	0	0	0
5. 지역개발	2,645	1,257	2,488	1,177	2,470	1,166	2,440	1,156
6. 산업일반	4,997	4,503	5,506	5,057	5,973	5,477	6,031	5,491
<b>III. 교통</b>	1,582	1,098	1,577	1,105	1,610	1,141	1,610	1,141
<b>IV. 주택</b>	10,315	4,383	10,721	4,556	11,427	4,856	11,667	4,958
<b>V. 저축장려</b>	235	101	234	101	224	97	219	95
<b>VI. 기타 감면</b>	3,752	1,872	3,842	1,920	3,882	1,914	3,937	1,938
<b>VII. 총계</b>	23,849	13,331	24,901	14,253	26,248	15,114	26,626	15,302

주: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Entwicklung der Finanzhilfen des Bundes und der Steuervergünstigungen für die Jahre 2001 bis 2004, Übersicht 6

〈표 III-6〉 독일의 조세지출: 20대 조세감면제도(2004년도 기준)

(단위: 백만유로)

	총액	연방
주택소유장려제도(기본수당 및 생태적 추가지원)	7,685	3,266
주택소유장려제도(유아수당)	3,757	1,597
야근수당에 대한 소득공제	1,985	844
최종소비자로서의 기업을 위한 조세혜택	1,850	1,850
전열기운영자를 위한 조세혜택	1,457	1,457
현 조세부담이 큰 법인을 위한 조세혜택	1,450	1,450
문화서비스를 위한 조세혜택	1,350	694
설비투자 증가	1,070	509
임대아파트 현대화 및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증가	708	337
지방교통을 위한 감축 세율	570	293
전도 저장소	475	148
임대주택의 현대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증가	416	198
농업 및 임업에 대한 조세혜택	420	420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감면	409	186
제조업자에 대한 특혜	400	400
치과전문의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400	200
항공업 기기에 대한 미네랄 오일세 감면	373	373
사업용 증유에 대한 조세특혜	210	210
야간 난방에 대한 조세특혜	200	200
근로자 추가 보너스	178	76
총액	25,363	14,708
표5에서 보고된 총액 대비	95(%)	96(%)

주: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Entwicklung der Finanzhilfen des Bundes und der Steuervergünstigungen für die Jahre 2001 bis 2004, Übersicht 7

## 4. 영국

### 가. 배경

1978년 6월 '백서는 공공지출과 관련된 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는 하원의회 세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영국에서는 조세지원과 우대목록

을 1979~1980년 공공지출백서에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었으며 예산과정과 조세지출 목록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세지출 목록이 예산과정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직접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지출보고서는 단지 조세지원과 우대의 규모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영국의 조세지출 보고서는 크게 ‘조세지출’, ‘구조적인 조세감면’,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요소를 모두 가진 조세감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각 구분 내에 세목 별로 조세지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세목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휘발유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인지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목 내에 나열된 조세지출 항목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제지원을 비롯한 관련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세지출 항목은 세목에 따라 분류될 뿐 다른 기능별 분류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조세지출 목록은 전년도 비용에 대한 수정된 추정치와 당해연도 예비추정치를 제공한다. 또한 의회 등의 개별적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조세감면의 지출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연중 재검토된다.

## 다. 조세지출의 정의

조세감면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그 첫 번째 분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다. 동 조세감면의 효과는 특정 개인, 활동, 제품을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동 조세감면은 직접적인 예산지출의 대안이 되며, 그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 그 밖의 조세감면은 ‘구조적인 조세감면(structural reliefs)’이라 불리며, 조세구조의 핵심적인 요소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및 조세분배 목적,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고 납세순응을 위한 조세감면 등이

동 감면에 포함된다. 또한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조세감면의 요소를 모두 가진 조세 지원은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요소를 모두 가진 조세감면(reliefs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components)’으로 분류된다. 동 분류는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조세감면이 항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범주로써 생겨났다.

###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영국의 조세지출액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손실법을 사용하여 추정된다. 세수손실법은 제도의 폐지에 따른 형태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된 조세지출액은 해당 조항의 폐지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액과는 다르다. 조세지원 목록에서 각각의 조세지원은 다른 조세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별도로 추정된다.

또한 조세지출 규모는 국민계정자료 또는 세무행정상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되고 있다.

〈표 III-7〉 영국의 조세지출: 주요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단위: 백만파운드)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b>소득세</b>					
<b>다음 해당사항에 대한 세액경감</b>					
지정된 연금가입자	13,000	13,200	11,400	12,300	13,700
지정된 이익분배제도	190	160	0	0	0
주식 인센티브 플랜	40	100	160	260	310
지정된 저축형 주식 가입자	300	170	140	110	130
기업 경영 인센티브	0	0	50	50	60
지정된 회사 주식 옵션 가입자	0	0	0	100	120
개인 지분 가입자	700	625	625	425	425
개인 저축 가입자	725	800	1,000	1,175	1,400
벤처 캐피탈 신탁 가입자	60	0	15	220	315
기업 투자 가입자	280	210	180	180	180
전문적인 구독	50	60	70	75	80
임차료	100	90	90	90	90

〈표 III-7〉의 계속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b>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세액감면</b>					
퇴직금(30,000파운드 한도)	850	800	800	1,000	1,000
국가저축증서의 이자소득(목차 관련 증서 포함)	170	160	120	120	100
특별저축이자	150	100	50	0	0
프리미엄 채권의 상금	110	90	100	150	170
자선사업 소득	850	900	1,000	950	1,100
왕실공무원의 해외근무수당	70	80	90	95	85
근무관련 이사비용 공제(8,000파운드 한도)	300	300	300	300	300
<b>세액공제</b>					
생명보험료(1984년 3월 14일 이전 가입된 계약)	95	75	80	55	45
아동 세액공제	2,100	2,300	2,800	3,300	3,300
장애인 세액공제	130	40	0	0	0
근로 세액공제	5,400	750	1,200	1,100	1,100
<b>법인세</b>					
연구개발 세액공제	80	400	430	480	510
오염토지 개선에 대한 공제	90	0	75	0	0
<b>소득세 &amp; 법인세</b>					
소규모 예산 영화 세액 감면	240	300	140	350	340
대규모 예산 영화 세액 감면	0	0	0	170	220
<b>국가보험</b>					
<b>다음 해당사항에 대한 구제</b>					
지정된 이익분배제도	130	110	0	0	0
주식 인센티브 플랜	20	60	110	180	210
저축형 주식 가입자	210	120	110	80	90
지정된 연금 가입자	4,800	5,100	5,800	6,700	7,400
<b>자산이득세</b>					
주택판매이득금에 대한 공제	6,000	10,000	10,500	13,000	12,000
<b>상속세</b>					
<b>다음 해당사항에 대한 구제</b>					
농업기기에 대한 구제	120	140	190	215	225
사업자산에 대한 구제	120	90	170	180	200
봉사기관으로 유산상속에 대한 공제	360	350	340	385	420
<b>부가가치세</b>					
<b>다음 해당사항에 대해 영세율 적용</b>					
음식	9,150	9,700	10,050	10,200	10,600
거주지 신축	3,050	4,300	6,300	6,400	6,550
국내 운송	1,650	1,850	2,000	2,150	2,250
국제 운송	200	250	150	100	100

〈표 III-7〉의 계속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서적, 신문, 잡지	1,400	1,500	1,650	1,550	1,550
아동의류	800	1,100	1,150	1,150	1,200
상하수도	950	1,000	1,000	1,050	1,050
약	750	850	1,100	1,300	1,350
봉사기관 제공 물품	150	200	200	200	200
특정 규모 이상의 선박 및 항공기	450	550	450	600	600
장애자용 차량운반구	350	350	400	400	400
<b>다음 해당사항에 대해 경감된 세율 적용</b>					
국내 연료 및 동력	1,750	1,750	1,800	2,000	2,000
특정 주거 용도 변경 및 수선	100	100	150	150	150
에너지 절약 자재	0	0	50	50	50
여성 위생 용품	0	0	50	50	50
<b>합계</b>	<b>58,590</b>	<b>61,180</b>	<b>64,635</b>	<b>71,145</b>	<b>73,725</b>

주: Tax Ready Reckoner and Tax Reliefs, Table 7

〈표 III-8〉 영국의 조세지출: 주요 구조적인 조세감면 추정치

(단위: 백만파운드)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b>소득세</b>					
개인 세액공제	34,800	35,900	36,400	36,600	38,200
<b>법인세</b>					
이윤배분제도 가입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400	450	400	800	1,100
<b>소득세 및 법인세</b>					
이중과세구제	6,500	8,000	7,000	8,000	8,000
<b>국가보험</b>					
<b>계약상 직장보험 환급</b>					
종업원에 의한 환급	6,780	7,430	6,900	7,500	7,800
보험 당국에 의한 환급	120	310	300	300	300
개인연금 및 제3자 연금	2,820	3,730	3,400	3,200	3,400
<b>부가가치세</b>					
<b>다음 해당하는 사항에 환불</b>					
북아일랜드 정부의 비사업용 구매	250	250	250	300	250
지역 정부단체의 비사업용 구매	4,850	5,500	6,000	6,650	7,600
중앙정부, 건강복지국 및 NHS신탁의 계약 서비스	2,650	2,550	3,650	3,700	4,000
<b>합계</b>	<b>59,170</b>	<b>64,120</b>	<b>64,300</b>	<b>67,050</b>	<b>70,650</b>

주: Tax Ready Reckoner and Tax Reliefs, Table 7

〈표 III-9〉 영국의 조세지출: 주요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요소를 모두 가진 조세감면 추정치  
(단위: 백만파운드)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b>소득세</b>					
노령자 세액공제	1,400	1,600	2,000	2,200	2,300
저축에 대한 경감 세율	0	0	0	170	190
다음 해당사항에 대한 공제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영국 국공채	750	750	850	970	970
자녀공제(독신부모 공제 포함)	880	980	980	1,060	1,100
사고장애자	140	630	610	610	610
근로장애자	90	90	80	50	50
간호공제	250	250	250	100	100
장애인 생활비 공제	460	500	500	320	330
보훈자	90	110	100	90	100
전쟁 미망인 연금	50	70	70	70	70
<b>법인세</b>					
중소기업을 위한 경감세율 적용	1,900	2,100	2,300	3,110	3,380
법인세 개시 세율	160	300	350	420	470
대지분에 대한 이득 감면	0	260	260	260	260
<b>소득세 및 법인세</b>					
자본수당	16,500	18,200	17,900	17,620	17,820
다음의 사항 중 선택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00	340	340	370	390
에너지 절약 기술 투자 수당	90	150	180	180	170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수당	100	100	490	190	90
<b>자산이득세</b>					
1982년 3월에 대한 환급	340	210	300	290	270
Taper relief	575	500	1,100	3,500	4,500
다음 해당사항에 대한 공제 :					
신용금고소득	1,200	700	1,100	1,550	1,850
유산자산 추가소득	750	650	600	650	700
<b>석유세</b>					
해당 지출	150	150	180	170	90
석유세 환급	600	450	500	580	880
측정자산에 대한 비준금	260	160	220	130	60

〈표 III-9〉의 계속

	2001 ~ 2002	2002 ~ 2003	2003 ~ 2004	2004 ~ 2005	2005 ~ 2006
관세수입에 대한 구제	60	50	30	50	40
영국 Gas 매출수익(1975년 7월 이전 계약에 한정)	200	160	80	60	110
<b>상속세</b>					
Nil Rate Band	7,100	8,300	8,500	9,400	9,900
미망인에 대한 공제	1,300	1,500	1,400	1,600	1,800
<b>인지세</b>					
특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거래에 대한 공제	160	140	150	170	590
특정 낙후지역에서 거주자의 거래에 대한 공제	10	70	530	1,000	220
자산기관과의 거래	0	0	40	60	100
단체 공제	0	0	610	770	1,350
등기된 사회지주와의 거래	0	0	160	60	50
<b>국가보험</b>					
자영업자를 위한 공제	2,300	1,300	1,700	1,800	2,000
<b>부가가치세</b>					
<b>다음 해당사항에 대한 공제</b>					
국내 수자원의 임대	2,600	2,750	2,550	2,850	2,950
상업용 자산의 공급	450	450	100	150	150
개인교습	150	150	250	300	300
의료서비스	600	650	700	800	800
운송서비스	400	400	400	500	500
매장	100	100	100	100	100
금융 및 보험	2,250	2,350	2,400	3,650	3,900
도박	900	900	1,150	1,200	1,250
중소무역상	400	400	450	300	300
<b>자동차소비세</b>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0	0	140	140	140
<b>합계</b>	46,015	48,920	52,700	59,620	63,300

주: Tax Ready Reckoner and Tax Reliefs, Table 7

## 5. 미 국

### 가. 배 경

미국에서는 1960년대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지원이 그 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8년 미국정부는 재무부의 연차보고서에서 최초로 조세지출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때의 조세지출 분석을 보면, 특정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조세지원의 상세 목록과 각 항목별로 상실된 세입 추정액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세지출예산은 1974년 의회예산법에 의거 조세지출 목록을 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다.

###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조

미국의 조세지출보고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포괄하며 각 세목 내에 예산상의 기능에 따라 구분을 두어 개별 조세지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예산상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국방, 국제교류, 일반 과학 및 기술, 에너지, 천연자원, 농업, 산업과 주택, 교통, 지역개발, 교육훈련과 고용 그리고 사회개발, 의료, 소득보장, 사회보장 등으로 구분된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여 조세지출액 추정치를 보여주었다고 해서 이들 범주의 납세자들이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조세지출의 궁극적 수혜자는 상황에 따라 주주, 피고용인, 고객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 다. 조세지출의 정의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이라 함은 특별 비과세, 감면, 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의 형태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는 주로 실제

조세제도와 대비되는 기준조세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세지출은 어떤 조세제도를 비교기준으로 설정할 때 이 비교기준에 대한 예외적 우대조항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4년 의회예산법은 조세제도의 비교기준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어떤 세법 조항이 예외적 우대조항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판단의 문제였다.

반면, 현재 미국의 조세지출예산은 두 가지 비교기준을 사용하여 조세지출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 과세기준과 준거세법 기준이다. 정상적 과세기준(the normal tax baseline)은 소득을 주어진 기간 동안 변화한 순부와 소비의 합계로 정의하는 포괄적 소득세의 실제 운용형태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정상적 과세기준하에 조세지출은 개인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소득을 얻기 위해 부담한 비용의 공제를 포함하며 특정한 세율구조와 납세단위에 대한 특정 정의에 제한되지 않는다. 반면, 준거세법 기준(the reference tax law baseline)은 현행 법률과 더욱 가까운 것이다. 준거세법 기준에서의 조세지출은 실용적 기능을 위해 규정된 세법상의 특별한 예외조항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실용적 기능이라 함은 국방, 농업, 의료 등 예산상의 범주에 대응하는 것이다.

## 라.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각 조세지출 추정치는 다른 조세조항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측정되었다. 이는 곧 조세조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하나의 조세지출 항목의 변화가 기타 항목의 변화를 유발한다면 전체 조세지출 추정치 역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조세지출보고서의 표현양식을 보면 각 조세지출에 따른 세입손실분이 합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조세지출의 합산은 조세지출 상호간의 영향 때문에 부정확한 총계치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은 세입손실법, 지출등가법, 현재가치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중 현재가치법<sup>4)</sup>은 과세이연을 초래하는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

4) 과세이연의 경우, 조세지출액은 당해연도의 이연금액에 과거에 이연되었던 금액 중 당해연도에 환입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그런데 당해연도의 이연분은 미래 시점에서 환입될 것이므로 미래의 조세수입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당기의 조세지출로 반영한다.

는 데 사용된다. 1983년 이전에는 세입손실법에 의해서만 조세지출을 추정하였으며, 1983년에 지출등가법이 조세지출의 예산효과에 대한 척도로서 추가 도입되었다. 지출등가법에 따른 추정치는 납세자가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세후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지출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지출등가법에 따른 추정치로 조세지출 비용과 직접 연방지출 비용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세지출은 다양한 자료원과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는데, 일부는 표본 납세신고 자료를 사용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미시시물레이션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국민계정자료 또는 개별 산업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표 III-10〉 미국의 조세지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백만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b>국방</b>					
군인을 위한 소득공제	2,160	2,190	2,210	2,460	2,490
<b>국제교류</b>					
미국시민의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2,450	2,740	2,620	2,680	2,750
해외 연방정부 공무원 수당 공제	760	760	770	850	900
해외소득공제	4,490	4,820	5,150	5,500	5,170
재고자산매각 예외규정	1,400	1,470	1,540	1,500	1,620
다국적기업의 이윤이월규정	6,600	7,000	7,450	7,240	7,000
금융회사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1,300	1,950	2,050	2,130	2,190
<b>일반 과학 및 기술</b>					
연구 및 실험 비용	2,020	1,660	(1,980)	(2,330)	4,110
연구활동장려비	5,370	6,870	4,960	4,680	5,130
<b>에너지</b>					
연료 개발 및 탐험 비용	50	150	210	260	400
연료고갈비용	250	610	640	1,320	1,280
대체자원 개발 세액공제	900	1,560	1,280	1,040	1,040
석유 및 가스 개발기기의 자산손실	20	10	20	20	20
석탄 개발비의 자산이득처리 규정	100	100	100	70	70
에너지설비 채권에 대한 이자 공제	90	110	90	100	100
석유개발향상 세액공제	310	330	400	330	340
신기술 개발비용 공제	60	100	280	330	470
알콜연료 개발비용 공제	30	30	30	30	30

〈표 III-10〉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순정 휘발류 개발비용 세액공제	50	70	70	70	70
공익기업으로부터의 보조금 공제	70	80	80	100	100
<b>천연자원</b>					
미네랄 개발 및 탐험비용	10	30	10	230	230
물, 하수오물, 위해물 설비 채권이자 공제	250	260	250	500	530
산림자원에 대한 자산이득처리 규정	400	480	450	70	70
다년수목 관리 비용공제	100	110	100	340	350
역사적 건물보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360	370	340	300	320
EPA 규정에 따른 자본비용 공제	180	210	270	0	10
<b>농업</b>					
특정 자산지출의 비용처리 규정	170	180	120	100	110
다기간 생산사업비용의 공제	120	130	90	50	60
농업종사자를 위한 대출의 특별처리	10	10	10	10	10
특정 소득에 대한 자산이득처리 규정	990	1,060	1,050	670	730
농업종사자의 소득 균분	70	70	70	40	40
농기구 매각익의 과세이연	10	10	10	10	10
바이오디젤 세액공제	0	0	0	0	30
<b>산업</b>					
(금융기관 및 보험)					
신용금고에 대한 공제	1,000	1,020	1,300	1,270	1,330
금융기관의 불량부채비준금 초과분 인정	60	0	40	(20)	(20)
생명보험 이자수익에 대한 공제	16,290	17,690	18,900	20,830	22,750
중소보험기관에 대한 특별세법 적용	10	10	120	10	10
특정보험회사에 대한 세액공제	220	210	190	180	190
중소생명보험사에 대한 감면	100	100	90	80	80
<b>주택</b>					
소유주택 Mortgage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면제	800	870	910	1,020	1,110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면제	160	180	280	360	390
소유주택 Mortgage 이자비용 공제	64,510	63,590	61,160	61,450	68,870
소유주택의 재산세 공제	22,410	21,760	22,090	19,930	16,590
1987년 장기할부판매수익의 이월규정	1,040	1,050	1,080	1,100	1,120
주택매매소득에 대한 자본이득 공제	19,090	19,670	20,260	29,730	32,840
자가주택 임대소득 공제	0	0	0	24,590	28,600
주택임대손실의 공제 (\$25,000 한도)	4,800	5,690	5,710	5,030	4,900
저소득 주택투자 공제	3,220	3,290	6,210	3,660	3,850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상각	5,190	1,590	1,220	750	(156)

〈표 III-10〉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b>무역</b>					
불량부채의 비용처리	30	0	20	30	30
이전이자소득의 특별처리규정	80	50	50	50	50
자산소득(농업, 임업, 철광산업 제외)	67,800	56,060	25,730	25,150	27,200
소기업주식 자본이득세 감면	70	100	130	160	210
상속시 자산소득 Step-up basis 인정	26,540	26,890	14,880	24,200	26,140
증여재산의 자산소득 Carry-over basis 인정	530	640	590	210	240
중소기업주식매매손실에 대해 일반소득처리	40	40	40	50	50
임대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특별상각	4,540	(1,800)	(2,290)	(3,250)	(4,180)
기계장비에 대한 특별상각	37,860	47,770	48,520	44,690	(11,000)
소량투자의 비용처리 인정	1,670	(360)	1,030	1,520	4,820
자본금에 대한 상각인정	130	110	110	80	50
확정 법인세율 적용	4,940	4,870	3,030	2,450	3,190
소량 발행 채권 이자 공제	310	330	390	450	490
국내 생산행위 공제	0	0	0	0	3,270
영화, TV 제작에 대한 특정 규정	0	0	0	0	90
<b>운송</b>					
운송회사의 세액 이월규정	20	20	20	20	20
근로자 주차비용 공제	1,980	2,070	2,130	2,470	2,590
회사제공 승차권 공제	220	250	320	410	480
철로 유지비용 공제	0	0	0	0	70
<b>지역개발</b>					
건물보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0	30	30	40	40
IDB 소득공제(공항, 항만, 스포츠센터 등)	630	690	770	850	930
특정 Co-operative 소득공제	60	60	60	60	60
권리지역(Empowerment Zone)	380	730	1,070	1,080	1,120
신규시장 세액공제	10	90	190	290	430
환경치료비용 공제	80	80	80	80	70
매개 자산 처분관련 자본이득세 이연	0	0	0	0	(490)
<b>교육, 훈련 및 사회사업</b>					
(교육)					
장학금 수익공제	1,210	1,270	1,260	1,320	1,400
HOPE 세액공제	4,130	4,110	3,290	3,320	3,410
평생교육 세액공제	2,370	2,180	1,910	2,190	2,130
개인퇴직계정 교육	30	50	70	110	140
학생대출이자 공제	390	450	730	760	780

〈표 III-10〉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고등교육비공제	0	420	1,730	1,280	1,830
주립 학원비 선급 플랜	190	270	50	210	490
학생대출채권이자 공제	230	240	260	290	310
비영리사립기관 채권이자 공제	540	580	780	970	1,050
지역 학원 소지자에 대한 공제	30	50	80	90	110
교육비지원 저축채 이자 공제	10	10	10	10	10
19세 이상의 학생자녀를 둔 학부모 공제	1,010	2,480	3,140	3,200	2,670
교육헌금 공제	3,830	4,020	3,670	3,690	3,420
고용주 제공 교육비 공제	260	400	500	530	560
교사비용 관련 특별 공제	0	0	140	150	160
학생대출 면제	0	0	0	0	20
(고용, 훈련 및 사회사업)					
취업비용 세액공제	300	380	430	280	250
근로복지 공제	90	80	60	60	60
고용주 제공 자녀부양비용 면제	720	690	590	600	620
고용주 제공 자녀부양비용 공제	0	40	90	0	8
입양자녀부양비용 공제	190	220	250	290	310
입양비 공제	130	140	220	450	500
근로자 식대 및 숙박비 공제	710	740	780	810	850
자녀공제	19,840	22,170	37,970	22,400	32,710
자녀부양비용 세액공제	2,670	2,750	2,720	2,990	3,140
장애자 세액공제	50	50	50	30	40
기부금공제(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이외)	30,150	30,860	30,020	27,370	29,670
수양비 공제	500	450	430	440	440
교구수당 공제	350	350	380	430	460
<b>의료</b>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혜택 공제	82,800	99,060	101,920	102,250	112,160
자가고용 의료보험료 공제	1,520	1,760	2,550	3,330	3,780
근로자 의료보험 공제	4,730	5,280	0	0	0
의료저축 계정	20	20	(30)	620	1,050
의료비 공제	4,990	5,710	6,240	7,380	8,590
병원설립 채권 이자 공제	1,100	1,200	1,620	1,870	2,020
기부금공제(의료기관)	4,010	4,240	3,390	3,090	3,350
고아 약품 개발 세액공제	140	140	160	180	210
청십자공제	270	300	350	400	390
해직 및 퇴직자 구입 건강보험 세액공제	0	0	0	50	60

〈표 III-10〉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b>소득보장</b>					
철도종사자 퇴직금 공제	380	390	400	400	400
근로자 소득공제	5,560	5,750	6,100	5,490	5,730
공공지원 혜택 공제	370	380	400	410	430
장애 채광산업종사자 소득공제	70	70	60	60	50
장애 보훈자 연금 공제	110	110	100	100	100
연금에 대한 순공제액					
- Employer Plan	42,070	51,260	59,480	46,970	50,330
- 401(k) Plan	44,080	50,830	51,560	47,730	45,870
- 개인연금구좌	18,680	19,080	20,060	7,450	7,340
- 중저소득층 저축자 공제	0	850	880	970	1,100
- Keogh Plan	6,160	7,000	6,020	8,830	9,380
기타 근로자 혜택 공제					
- 단체생명 보험금	1,750	1,780	1,800	2,070	2,090
- 사고보험 및 장애 보험	210	220	230	260	280
소기업 퇴직플랜 공제	0	10	40	80	100
실업수당을 위한 신용구좌로부터 수익공제	20	20	30	20	20
ESOP 규정	1,290	1,630	1,780	1,920	2,060
맹인을 위한 추가공제	40	40	40	30	40
노인을 위한 추가공제	1,970	1,890	1,840	1,700	1,810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30	20	20	20	20
사고손실 공제	210	280	500	550	250
이전소득 세액공제	4,940	4,450	5,099	4,890	4,980
<b>사회보장</b>					
퇴직자를 위한 사회보장 혜택	17,830	18,340	18,600	19,200	19,480
장애자를 위한 사회보장 혜택	2,690	2,910	3,230	3,580	3,740
부양가족 및 미망인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3,720	3,730	4,060	4,140	4,120
<b>보훈</b>					
장애 및 전사 보훈자 공제	3,150	3,160	3,320	3,300	3,560
보훈연금 공제	70	70	100	110	120
GI Bill 공제	90	90	110	130	150
보훈자 주택채권이자 공제	40	40	40	50	50
<b>일반 보조</b>					
공공사업을 위한 이자소득공제	23,100	25,250	25,480	26,150	26,530
비사업부문 지방세 감면	45,520	47,430	49,770	45,290	39,090
미국령 국가로부터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2,190	2,240	1,200	1,000	900

〈표 III-10〉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b>이자소득</b>					
저축채권 이자소득의 이월규정	290	510	30	50	50
<b>추가사항</b>					
다음사항을 공제					
- 자가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22,410	21,760	22,090	19,930	16,590
- 비사업부문 지방세	45,520	47,430	49,770	45,290	39,090
다음의 지방채 이자 공제					
- 공공목적	23,100	25,250	25,480	26,150	26,530
- 에너지 기관	90	110	90	100	100
- 하수구 및 위해물질 처리 기관	400	450	450	500	530
- 소규모 발행	310	330	390	450	490
- 자가소유 용자 보조금	800	870	910	1,020	1,110
- 임대주택	160	180	280	360	390
- 항공, 항만 등 기관	630	690	770	850	930
- 학생대출이자	230	240	260	290	310
- 비영리 사립교육기관	540	580	780	970	1,050
- 병원설립	1,100	1,200	1,620	1,870	2,020
- 보훈자 주택	40	40	40	50	50
학원지역 채권 보유자에 대한 공제	30	50	80	90	110
<b>합계</b>	809,500	853,140	840,399	826,070	814,832

주: *Analytical Perspectives*, Table 19-1

## 6. 일본

일본에서는 별도의 조세지출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 및 그 추정방법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이 조세지출 항목과 그 수치를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표 Ⅲ-11〉 일본의 조세지출

(단위: 억엔)

	2001	2002	2003	2004	2005
<b>소득세</b>					
장해자, 노인 등 소액예금 이자 등에 대한 비과세	6,010	1,690	1,190	1,290	830
근로자 주택, 연금저축에 대한 이자 비과세	0	40	40	40	30
생명보험료 공제	2,650	2,530	2,390	2,430	2,370
손해보험료 공제	170	160	150	150	140
배당소득 과세 특례	90	110	1,390	1,630	1,670
장기소유상장특정주식 등 양도소득 특별공제	0	560	0	0	0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	5,870	6,010	5,810	6,240	6,910
진료용 기기 등에 대한 특별상각	50	50	30	30	30
청색신고 특별공제	690	710	710	650	700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진체국책이자 과세 특례	40	70	100	90	280
사회보험 진료보수 소득계산 특례	190	200	220	210	200
가내노동자 등 사업소득 등 소득계산 특례	200	180	170	60	60
거주용 재산 매환 등 종합 양도손실 공제	80	90	70	80	80
공적연금 등 공제 및 최저공제액 등 특례	0	0	0	0	1,230
동거 특별장해자 노친 등 부양공제 등 특례	570	490	470	500	540
과부공제 특례	10	10	10	20	20
소액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입 특례	0	0	0	0	10
IT 투자촉진 세제	0	0	70	50	50
<b>계</b>	16,620	12,900	12,820	13,470	15,150
<b>법인세</b>					
(특별상각)					
공해방지용 설비	140	70	60	60	50
선박	0	20	30	10	30
특정고도기술산업 집적지역 산업용 설비 특별상각	30	30	40	10	30
개발연구용 설비 특별상각	0	0	790	700	600
사업혁신설비 특별상각	10	10	100	60	60
특정전기통신설비 등 특별상각	30	30	20	10	20
사료제조설비 등 특별상각	0	0	0	10	0
재상품화설비 등 특별상각	40	20	20	30	40
특정지역 공업용 기기 등 특별상각	60	40	40	30	20
진료용기구 등 특별상각	150	100	100	120	110
경영기반강화 기구 등 할증상각	30	20	10	10	0
장해자 고용 종합 기기 등 할증상각 등	0	10	10	10	10
특정집적지 수입관련사업용 자산 특별상각	20	10	0	0	0

〈표 III-11〉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우량 임대주택 등 할증상각	10	0	0	0	0
창고용 건물 등 할증상각	20	10	0	0	0
소액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손금산입 특례	0	0	410	440	470
(준비금)					
특정재해방지준비금	10	0	0	10	0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10	10	0	0	0
신간선철도대규모 개수준비금	0	100	100	100	100
사용제연료재 준비금	280	300	370	360	380
가스열량변경준비금	10	10	10	10	0
프로그램 등 준비금	20	20	0	0	0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	170	180	140	170	160
일본국제박람회출진준비금	0	10	10	0	0
이상위험준비금	170	140	110	100	130
특별수선준비금	30	30	20	10	20
중소기업 등 대도인당금 특례	290	0	0	30	10
(세액공제 등)					
시험연구비 총액 세액공제	0	0	6,290	6,280	6,370
시험연구비 증가분 세액공제	410	180	0	0	0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 세제	0	140	200	200	200
수급구조 개혁추진 투자촉진 세제	480	380	250	230	280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	1,450	2,060	1,710	1,450	1,530
중소기업 신기술채화 투자촉진세제	570	0	0	0	0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세제	50	90	100	40	10
기술 등 해외소득 세액공제	20	0	0	0	0
농업 및 어업 협동조합 등 과세 특례	10	10	10	0	0
IT 투자촉진 세제	0	0	5,170	5,010	5,120
사업화설비 등 취득 장합 등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	10	0	0	0	0
특정지역 공업용 기기 등 세액공제 등	20	20	20	0	0
제품수입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120	0	0	0	0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0	0	0	0	120
신광상탐광비 등 특별공제	0	0	0	10	20
특정기금 부담금 등 손금산입 특례	20	20	40	40	70
동족회사 유보금과세 특례	210	270	1,740	1,780	1,550
(교제비)					
교제비 과세특례	(6,200)	(6,150)	(4,420)	(3,840)	(3,470)
<b>계</b>	<b>(1,300)</b>	<b>(1,810)</b>	<b>13,500</b>	<b>13,490</b>	<b>14,040</b>

〈표 III-11〉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2005
<b>기타의 세</b>					
주택취득자금 상속시 정산 과세 특례	0	0	440	440	810
친자간 주택취득자금 증여세 특례	390	390	0	0	0
주택용 가옥 등 등록면허세 경감	640	590	390	450	600
상공증금 등 저당권설정 등 등록면허세 경감	30	20	20	20	20
인정사업재구축 계획 등 등록면허세 경감	30	40	110	200	110
인정 민간도시 재생사업계획 등 등록면허세 경감	0	0	50	10	0
부동산 등기, 등록, 면허세 특례	0	0	2,740	2,730	2,650
중고층 건축물 등록면허세 경감	0	30	0	0	0
청주 등 주세 세율 특례	110	100	100	100	100
기타 주세세율특례	0	0	10	10	10
석유 석탄세 환부	580	600	600	620	640
항공기 연료세 세율특례	90	90	80	80	90
사용제 자동차 중량세 환부	0	0	0	50	70
부동산양도계약서 등 인지세 세율특례	110	150	140	140	140
약속수행 인지세 세율 등 특례	120	130	100	110	0
주식분할등 주권인지세 비과세	0	40	70	60	70
<b>계</b>	2,100	2,180	4,850	5,020	5,310
<b>합계</b>	17,420	13,270	31,170	31,980	34,500

주: 『産業稅制』, 參考資料 II

## IV. 조세지출의 국가간 비교

### 1.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규모

각국의 조세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표 IV-1〉~〈표 IV-6〉 참조).

조세지출 비율은 각국의 조세지출보고서상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을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수규모로 나누어 구하였다. 이 때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수규모는 편의상 각국의 조세지출보고서상 조세지출 합계액에 2005년도 OECD에서 발간한 각국의 세수 통계치를 합산하여 구하였다. 참고로, OECD에서 집계한 세수에는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이 포함된다. 그리고 2004 및 2004~2005년도의 세수는 추정치로 제시되어 있다.

각국의 조세지출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매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각국의 안정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지출 비율을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였을 때 캐나다·영국·미국은 20% 초반대를, 호주는 10% 초반대를, 독일과 일본은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IV-1〉 호주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단위: 백만호주달러)

해당연도	조세지출 규모(A)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조세수입 규모(B)	조세지출 비율 (A/(A+B))
2001~02	30,600	216,946	12.4%
2002~03	29,755	238,181	11.1%
2003~04	33,953	257,267	11.7%
2004~05	36,958	278,534	11.7%

〈표 IV-2〉 캐나다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해당연도	조세지출 규모(A)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조세수입 규모(B)	조세지출 비율(A/(A+B))
2001	113,524	388,046	22.6%
2002	109,518	400,531	21.5%
2003	131,476	413,832	24.1%
2004	134,745	431,700	23.8%

〈표 IV-3〉 독일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단위: 백만유로)

해당연도	조세지출 규모(A)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조세수입 규모(B)	조세지출 비율(A/(A+B))
2001	23,849	763,140	3.0%
2002	24,901	759,975	3.2%
2003	26,248	768,370	3.3%
2004	26,626	764,700	3.4%

〈표 IV-4〉 영국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단위: 백만파운드)

해당연도	조세지출 규모(A)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조세수입 규모(B)	조세지출 비율(A/(A+B))
2001~02	104,605	369,907	22.0%
2002~03	110,100	372,087	22.8%
2003~04	117,335	391,265	23.1%
2004~05	130,765	419,300	23.8%

〈표 IV-5〉 미국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단위: 백만US달러)

해당연도	조세지출 규모(A)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조세수입 규모(B)	조세지출 비율 (A/(A+B))
2001	809,500	2,907,999	21.8%
2002	853,140	2,745,067	23.7%
2003	840,399	2,801,323	23.1%
2004	826,070	2,964,700	21.8%

〈표 IV-6〉 일본의 조세지출 및 조세수입 규모

(단위: 억엔)

해당연도	조세지출(A)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조세수입 규모(B)	조세지출 비율 (A/(A+B))
2001	17,420	1,371,890	1.3%
2002	13,370	1,281,620	1.0%
2003	31,170	1,269,080	2.4%
2004	31,980	799,430(*)	-(*)

주: 2004년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세수 추정치만 집계되어 있어 비율 계산을 생략함.

## 2. 주요 항목의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

제Ⅲ장에서 살펴본 OECD 주요국의 개별 조세지출 항목 중 그 금액의 크기 순으로 20대 조세지출액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IV-7〉부터 〈표 IV-11〉과 같다.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순위를 매김에 있어 보고서상 가장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항목별 지원금액이 큰 순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각 항목의 지원 금액 옆에 조세지출보고서에서 보고된 총액 대비 해당 항목의 비율을 백분율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각국의 조세지출에 대한 변천을 보여주고자 보고서상 가장 최근 연도 이전의 3~4개 연도에 대한 금액 및 비율 역시 제시하였고 특히 표상 최초연도인 2001년 또는 2001~2002년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하기의 표에는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20대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을 해당 표 밑에 주기하였다.

그 결과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항목이 조세지출 총계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개인 및 신탁에 대한 자본이득세 할인 및 가족세제 혜택에 대한 감면이 각각 12%, 6%를 차지하며 뒤를 잇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기본 인적공제가 17%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지방으로 소득이전이 11%, 허가된 연금플랜이 8%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자본수당, 지정된 연금 가입자, 주택판매 이득금에 대한 공제가 각각 13%, 10%, 9%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연금에 대한 순공제액,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혜택 공제, 소유주택 Mortgage 이자비용 공제가 각각 14%, 14%, 9%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주요 3대 조세지출액은 주택 차입금 등 특별세액 공제, 시험연구비 총액 세액공제, IT 투자촉진 세제로 각각 20%, 19%,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7〉 호주의 20대 조세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

	2001~2002 <sup>1)</sup>		2002~2003		2003~2004		2004~2005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11,140	(36.4)	10,395	(34.9)	14,000	(41.2)	14,405	(39.0)
개인 및 신탁에 대한 자본이득세 할인	2,130	(7.0)	2,740	(9.2)	2,920	(8.6)	4,260	(11.5)
가족 세제 혜택에 대한 감면	1,800	(5.9)	1,710	(5.7)	2,520	(7.4)	2,330	(6.3)
연장자 공제	1,480	(4.8)	1,620	(5.4)	1,800	(5.3)	1,880	(5.1)
사회보장혜택 및 연금 수당 등의 수혜자에 대한 공제	940	(3.1)	1,020	(3.4)	1,140	(3.4)	1,290	(3.5)
차량 관련 비용 공제	1,012	(3.3)	1,042	(3.5)	1,084	(3.2)	1,114	(3.0)
특정 소득지원 혜택, 연금, 수당에 대한 감면	900	(2.9)	930	(3.1)	970	(2.9)	980	(2.7)
항공 가솔린 및 터빈 연료에 특별 세율 적용	770	(2.5)	740	(2.5)	745	(2.2)	765	(2.1)
개인 건강보험료 등 환급에 대한 감면	590	(1.9)	680	(2.3)	740	(2.2)	740	(2.0)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	410	(1.3)	410	(1.4)	400	(1.2)	670	(1.8)
특정 수혜자에 대한 증여 세액공제	440	(1.4)	480	(1.6)	560	(1.6)	630	(1.7)
대체연료에 대한 면세	530	(1.7)	620	(2.1)	570	(1.7)	600	(1.6)
연구개발비 세금혜택	500	(1.6)	415	(1.4)	530	(1.6)	545	(1.5)
장외 주식환매	15	(0.0)	15	(0.1)	195	(0.6)	530	(1.4)
공모사채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감면	750	(2.5)	700	(2.4)	560	(1.6)	470	(1.3)
재외 직무에 대한 소득세 감면	370	(1.2)	450	(1.5)	430	(1.3)	470	(1.3)
시 및 지방단체에 대한 세액감면	280	(0.9)	370	(1.2)	450	(1.3)	460	(1.2)
전쟁 관련 지급금 및 연금에 대한 감면	380	(1.2)	410	(1.4)	420	(1.2)	440	(1.2)
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감면	340	(1.1)	360	(1.2)	390	(1.1)	390	(1.1)
배우자, 부모, 간병인 등을 위한 공제	350	(1.1)	360	(1.2)	370	(1.1)	380	(1.0)
육아혜택 감면	340	(1.1)	360	(1.2)	350	(1.0)	380	(1.0)
합계	25,467	(83.2)	25,827	(86.8)	31,144	(91.7)	33,729	(91.3)

주: 1. ( ) 안은 비중임.

- 1) 위 항목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2001~2002년 20대 조세지출액 순위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공장 및 장비에 대한 가속상각 충당금, 중소기업에 대해 가속상각 등 혜택, 채광건물에 대한 가속상각, 퇴직위로금에 대한 공제가 있음.

〈표 IV-8〉 캐나다의 20대 조세지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2001 <sup>1)</sup>		2002		2003		2004		2005	
기본 인적공제	20,460	(18.0)	21,085	(19.3)	21,715	(16.5)	22,650	(16.8)	23,370	(16.7)
지방으로 소득이전	13,555	(11.9)	13,585	(12.4)	14,145	(10.8)	14,530	(10.8)	15,435	(11.0)
허가된 연금 플랜	940	(0.8)	(1,010)	-(0.9)	11,695	(8.9)	11,090	(8.2)	11,540	(8.2)
캐나다 어린이 세금 혜택	7,370	(6.5)	7,755	(7.1)	7,985	(6.1)	8,650	(6.4)	9,210	(6.6)
허가된 퇴직연금 플랜	4,040	(3.6)	2,425	(2.2)	8,475	(6.4)	7,295	(5.4)	7,720	(5.5)
비자본 손실 이월	6,320	(5.6)	5,015	(4.6)	5,170	(3.9)	5,265	(3.9)	5,205	(3.7)
전체포함 세율	1,770	(1.6)	2,810	(2.6)	3,665	(2.8)	4,670	(3.5)	4,770	(3.4)
기초 식료품에 대한 영세율	3,415	(3.0)	3,565	(3.3)	3,700	(2.8)	3,880	(2.9)	4,090	(2.9)
Quebec Abatement	2,965	(2.6)	3,050	(2.8)	3,195	(2.4)	3,270	(2.4)	3,475	(2.5)
GST/HST 공제	3,005	(2.6)	3,070	(2.8)	3,180	(2.4)	3,310	(2.5)	3,420	(2.4)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3,185	(2.8)	3,220	(2.9)	3,040	(2.3)	3,010	(2.2)	3,040	(2.2)
연금플랜: 근로자 납부분 공제	1,980	(1.7)	2,245	(2.0)	2,460	(1.9)	2,535	(1.9)	2,625	(1.9)
과학적 연구 및 실험적 개발 투자세액공제	2,321	(2.0)	2,378	(2.2)	2,435	(1.9)	2,487	(1.8)	2,549	(1.8)
고용자가 지불한 의료보험금에 대한 비과세	1,710	(1.5)	1,875	(1.7)	2,060	(1.6)	2,240	(1.7)	2,430	(1.7)
부분포함 세율	885	(0.8)	1,405	(1.3)	1,835	(1.4)	2,335	(1.7)	2,385	(1.7)
자산소득의 일부 비과세	1,985	(1.7)	1,665	(1.5)	2,120	(1.6)	2,150	(1.6)	2,195	(1.6)
자본이득에 대한 부분 과세	4,095	(3.6)	1,990	(1.8)	2,010	(1.5)	2,045	(1.5)	2,125	(1.5)
연금플랜: 고용주 납부분 비과세	2,160	(1.9)	2,140	(2.0)	2,100	(1.6)	1,985	(1.5)	2,005	(1.4)
기부금 공제	1,490	(1.3)	1,580	(1.4)	1,605	(1.2)	1,635	(1.2)	1,670	(1.2)
시당국에 대한 환급	700	(0.6)	725	(0.7)	805	(0.6)	1,475	(1.1)	1,540	(1.1)
합계	84,351	(74.3)	80,573	(73.6)	103,395	(78.6)	106,507	(79.0)	110,799	(79.0)

주: 1. ( ) 안은 비중임.

1) 위 항목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2001년 20대 조세지출액 순위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사기업 투자 소득에 대해 세액 환급, 제조 및 가공 수당, 노령자 공제가 있음.

〈표 IV-9〉 영국의 20대 조세지출

(단위: 백만파운드, %)

	2001~2002 <sup>1)</sup>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자본수당	16,500	(15.8)	18,200	(16.5)	17,900	(15.3)	17,620	(13.5)	17,820	(13.0)
지정된 연금가입자	13,000	(12.4)	13,200	(12.0)	11,400	(9.7)	12,300	(9.4)	13,700	(10.0)
주택판매이득금에 대한 공제	6,000	(5.7)	10,000	(9.1)	10,500	(8.9)	13,000	(9.9)	12,000	(8.8)
음식	9,150	(8.7)	9,700	(8.8)	10,050	(8.6)	10,200	(7.8)	10,600	(7.7)
Nil Rate Band	7,100	(6.8)	8,300	(7.5)	8,500	(7.2)	9,400	(7.2)	9,900	(7.2)
지정된 연금 가입자	4,800	(4.6)	5,100	(4.6)	5,800	(4.9)	6,700	(5.1)	7,400	(5.4)
거주지 신축	3,050	(2.9)	4,300	(3.9)	6,300	(5.4)	6,400	(4.9)	6,550	(4.8)
Taper relief	575	(0.5)	500	(0.5)	1,100	(0.9)	3,500	(2.7)	4,500	(3.3)
금융 및 보험	2,250	(2.2)	2,350	(2.1)	2,400	(2.0)	3,650	(2.8)	3,900	(2.8)
중소기업을 위한 경감세율 적용	1,900	(1.8)	2,100	(1.9)	2,300	(2.0)	3,110	(2.4)	3,380	(2.5)
아동 세액공제	2,100	(2.0)	2,300	(2.1)	2,800	(2.4)	3,300	(2.5)	3,300	(2.4)
국내 수자원의 임대	2,600	(2.5)	2,750	(2.5)	2,550	(2.2)	2,850	(2.2)	2,950	(2.2)
노령자 세액공제	1,400	(1.3)	1,600	(1.5)	2,000	(1.7)	2,200	(1.7)	2,300	(1.7)
국내 운송	1,650	(1.6)	1,850	(1.7)	2,000	(1.7)	2,150	(1.6)	2,250	(1.6)
국내 연료 및 동력	1,750	(1.7)	1,750	(1.6)	1,800	(1.5)	2,000	(1.5)	2,000	(1.5)
자영업자를 위한 공제	2,300	(2.2)	1,300	(1.2)	1,700	(1.4)	1,800	(1.4)	2,000	(1.5)
신용금고소득	1,200	(1.1)	700	(0.6)	1,100	(0.9)	1,550	(1.2)	1,850	(1.4)
미망인에 대한 공제	1,300	(1.2)	1,500	(1.4)	1,400	(1.2)	1,600	(1.2)	1,800	(1.3)
서적, 신문, 잡지	1,400	(1.3)	1,500	(1.4)	1,650	(1.4)	1,550	(1.2)	1,550	(1.1)
개인 저축 가입자	725	(0.7)	800	(0.7)	1,000	(0.9)	1,175	(0.9)	1,400	(1.0)
합계	80,750	(77.2)	89,800	(81.6)	94,250	(80.3)	106,055	(81.1)	111,150	(81.1)

주: 1. ( ) 안은 비중임.

1) 위 항목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2001~2002년 20대 조세지출액 순위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근로 세액공제, 상하수도에 대한 공제가 있음.

〈표 IV-10〉 미국의 20대 조세지출

(단위: 백만US달러, %)

	2001 <sup>1)</sup>		2002		2003		2004		2005	
연금에 대한 순공제액	110,990	(13.7)	129,020	(15.1)	138,000	(16.4)	111,950	(13.6)	114,020	(14.0)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혜택 공제	82,800	(10.2)	99,060	(11.6)	101,920	(12.1)	102,250	(12.4)	112,160	(13.8)
소유주택 Mortgage 이자비용 공제	64,510	(8.0)	63,590	(7.5)	61,160	(7.3)	61,450	(7.4)	68,870	(8.5)
비사업부문 지방세 감면	45,520	(5.6)	47,430	(5.6)	49,770	(5.9)	45,290	(5.5)	39,090	(4.8)
주택매매소득에 대한 자본이득 공제	19,090	(2.4)	19,670	(2.3)	20,260	(2.4)	29,730	(3.6)	32,840	(4.0)
자녀공제	19,840	(2.5)	22,170	(2.6)	37,970	(4.5)	22,400	(2.7)	32,710	(4.0)
기부금공제(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이외)	30,150	(3.7)	30,860	(3.6)	30,020	(3.6)	27,370	(3.3)	29,670	(3.6)
자가주택 임대소득 공제	0	(0.0)	0	(0.0)	0	(0.0)	24,590	(3.0)	28,600	(3.5)
자산소득(농업, 임업, 철광산업 제외)	67,800	(8.4)	56,060	(6.6)	25,730	(3.1)	25,150	(3.0)	27,200	(3.3)
공공사업을 위한 이자소득공제	23,100	(2.9)	25,250	(3.0)	25,480	(3.0)	26,150	(3.2)	26,530	(3.3)
지방채이자공제: 공공목적	23,100	(2.9)	25,250	(3.0)	25,480	(3.0)	26,150	(3.2)	26,530	(3.3)
상속시 자산소득 Step-up basis 인정	26,540	(3.3)	26,890	(3.2)	14,880	(1.8)	24,200	(2.9)	26,140	(3.2)
생명보험 이자수익에 대한 공제	16,290	(2.0)	17,690	(2.1)	18,900	(2.2)	20,830	(2.5)	22,750	(2.8)
퇴직자를 위한 사회보장 혜택	17,830	(2.2)	18,340	(2.1)	18,600	(2.2)	19,200	(2.3)	19,480	(2.4)
자가소유주택의 재산세 공제	22,410	(2.8)	21,760	(2.6)	22,090	(2.6)	19,930	(2.4)	16,590	(2.0)
의료비 공제	4,990	(0.6)	5,710	(0.7)	6,240	(0.7)	7,380	(0.9)	8,590	(1.1)
다국적기업의 이윤이월규정	6,600	(0.8)	7,000	(0.8)	7,450	(0.9)	7,240	(0.9)	7,000	(0.9)
근로자 소득공제	5,560	(0.7)	5,750	(0.7)	6,100	(0.7)	5,490	(0.7)	5,730	(0.7)
해외소득공제	4,490	(0.6)	4,820	(0.6)	5,150	(0.6)	5,500	(0.7)	5,170	(0.6)
연구활동장려비	5,370	(0.7)	6,870	(0.8)	4,960	(0.6)	4,680	(0.6)	5,130	(0.6)
합계	596,980	(73.7)	633,190	(74.2)	620,160	(73.8)	616,930	(74.7)	654,800	(80.4)

주: 1. ( ) 안은 비중임.

1) 위 항목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2001년 20대 조세지출액 순위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기계 장비에 대한 특별상각,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상각, 이전소득 세액공제가 있음.

〈표 IV-11〉 일본의 20대 조세지출

(단위: 억엔, %)

	2001 <sup>1)</sup>		2002		2003		2004		2005	
주택 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	5,870	(33.7)	6,010	(45.0)	5,810	(18.6)	6,240	(19.5)	6,910	(20.0)
시험연구비 총액 세액공제	0	(0.0)	0	(0.0)	6,290	(20.2)	6,280	(19.6)	6,370	(18.5)
IT 투자촉진 세제	0	(0.0)	0	(0.0)	5,170	(16.6)	5,010	(15.7)	5,120	(14.8)
부동산 등기, 등록, 면허세 특례	0	(0.0)	0	(0.0)	2,740	(8.8)	2,730	(8.5)	2,650	(7.7)
생명보험료 공제	2,650	(15.2)	2,530	(18.9)	2,390	(7.7)	2,430	(7.6)	2,370	(6.9)
배당소득 과세 특례	90	(0.5)	110	(0.8)	1,390	(4.5)	1,630	(5.1)	1,670	(4.8)
동족회사 유보금과세 특례	210	(1.2)	270	(2.0)	1,740	(5.6)	1,780	(5.6)	1,550	(4.5)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	1,450	(8.3)	2,060	(15.4)	1,710	(5.5)	1,450	(4.5)	1,530	(4.4)
공적연금 등 공제 및 최저공제액 등 특례	0	(0.0)	0	(0.0)	0	(0.0)	0	(0.0)	1,230	(3.6)
장해자, 노인 등 소액예금 이자등에 대한 비과세	6,010	(34.5)	1,690	(12.6)	1,190	(3.8)	1,290	(4.0)	830	(2.4)
주택취득자금 상환시 정산 과세 특례	0	(0.0)	0	(0.0)	440	(1.4)	440	(1.4)	810	(2.3)
청색신고 특별공제	690	(4.0)	710	(5.3)	710	(2.3)	650	(2.0)	700	(2.0)
석유 석탄세 환부	580	(3.3)	600	(4.5)	600	(1.9)	620	(1.9)	640	(1.9)
개발연구용설비 특별상각	0	(0.0)	0	(0.0)	790	(2.5)	700	(2.2)	600	(1.7)
주택용가옥 등 등록면허세 경감	640	(3.7)	590	(4.4)	390	(1.3)	450	(1.4)	600	(1.7)
동거 특별장해자 노친 등 부양공제 등 특례	570	(3.3)	490	(3.7)	470	(1.5)	500	(1.6)	540	(1.6)
소액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손금산입 특례	0	(0.0)	0	(0.0)	410	(1.3)	440	(1.4)	470	(1.4)
사용제연료제 준비금	280	(1.6)	300	(2.2)	370	(1.2)	360	(1.1)	380	(1.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진채국책이자 과세 특례	40	(0.2)	70	(0.5)	100	(0.3)	90	(0.3)	280	(0.8)
수급구조개혁추진 투자촉진 세제	480	(2.8)	380	(2.8)	250	(0.8)	230	(0.7)	280	(0.8)
합계	19,560	(112)	15,810	(118)	32,960	(105)	33,320	(104)	35,530	(103)

주: 1. ( ) 안은 비중임.

- 1) 위 항목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2001년 20대 조세지출액 순위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신기술체화 투자촉진세제, 시험연구비 증가분 세액공제, 친자 간 주택취득자금 증여세 특례, 중소기업 등 대도인당금 특례, 가내노동자 사업소득 등 소득계산 특례, 사회보험 진료보수 소득계산 특례, 손해보험료 공제,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 이상위험준비금이 있음.

### 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

OECD 주요국의 조세지출보고서에 기재된 조세지출 규모를 세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IV-12>부터 <표 IV-16>과 같다.

각국의 조세지출액을 세목별로 정리한 결과,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감면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간접세의 감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원이 특정 행위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소득에 대한 납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하고 세부담자에 대한 파악이 용이한 직접세에 대한 조세지원이 조세정책 목적달성에 더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2> 호주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 분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개인소득세	9,084	(29.7)	9,694	(32.6)	10,857	(32.0)	11,415	(30.9)
법인소득세	5,107	(16.7)	3,616	(12.2)	3,146	(9.3)	3,103	(8.4)
퇴직제도	11,955	(39.1)	11,150	(37.5)	14,751	(43.4)	15,193	(41.1)
부가급여과세	1,987	(6.5)	2,047	(6.9)	2,210	(6.5)	2,529	(6.8)
자본이득세	2,440	(8.0)	3,209	(10.8)	3,284	(9.7)	4,759	(12.9)
소비세	-124	(-0.4)	-142	(-0.5)	-446	(-1.3)	-372	(-1.0)
천연자원과세	151	(0.5)	181	(0.6)	151	(0.4)	331	(0.9)

주: 1. ( ) 안은 비중임.

<표 IV-13> 캐나다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인소득세	75,411	(66.4)	75,025	(68.5)	97,980	(74.5)	100,309	(74.4)	104,708	(74.7)
법인소득세	25,043	(22.1)	20,778	(19.0)	19,101	(14.5)	18,636	(13.8)	18,954	(13.5)
부가가치세	13,070	(11.5)	13,715	(12.5)	14,395	(10.9)	15,800	(11.7)	16,580	(11.8)

주: 1. ( ) 안은 비중임.

〈표 IV-14〉 영국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단위: 백만파운드, %)

구 분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소득세	29,780	(39.4)	25,990	(35.5)	25,710	(34.2)	27,695	(32.5)	29,830	(32.8)
법인세	2,230	(1.6)	3,060	(2.0)	3,415	(2.1)	4,270	(2.6)	4,620	(2.8)
소득세&법인세	17,230	(14.5)	19,090	(15.5)	19,050	(14.3)	18,880	(13.6)	19,030	(13.0)
국가보험	7,460	(10.5)	6,690	(10.4)	7,720	(10.1)	8,760	(10.0)	9,700	(10.2)
자산이득세	8,865	(5.4)	12,060	(6.9)	13,600	(7.5)	18,990	(9.6)	19,320	(9.3)
상속세	9,000	(5.5)	10,380	(6.0)	10,600	(5.8)	11,780	(6.0)	12,545	(6.0)
부가가치세	28,600	(22.2)	31,650	(22.9)	34,600	(24.5)	37,200	(24.2)	38,350	(24.2)
자동차소비세	0	(0.0)	0	(0.0)	140	(0.1)	140	(0.1)	140	(0.1)
석유세	1,270	(0.8)	970	(0.6)	1,010	(0.6)	990	(0.5)	1,180	(0.6)
인지세	170	(0.1)	210	(0.1)	1,490	(0.8)	2,060	(1.0)	2,310	(1.1)

주: 1. ( ) 안은 비중임.

〈표 IV-15〉 미국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인소득세	720,880	(89)	754,080	(88)	746,609	(89)	738,233	(89)	762,103	(94)
법인세	88,620	(11)	99,060	(12)	93,790	(11)	87,837	(1)	52,729	(6)

주: 1. ( ) 안은 비중임.

〈표 IV-16〉 일본의 세목별 조세지출액

(단위: 억엔,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득세	16,620	(95.4)	12,900	(97.2)	12,820	(41.1)	13,470	(42.1)	15,150	(43.9)
법인세	-1,300	(-7.5)	-1,810	(-13.6)	13,500	(43.3)	13,490	(42.2)	14,040	(40.7)
기타	2,100	(12.1)	2,180	(16.4)	4,850	(15.6)	5,020	(15.7)	5,310	(15.4)

주: 1. ( ) 안은 비중임.

## 4. 정리

위에서 조세지출에 대해 국가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는 III절에서의 OECD 주요국의 조세지출 최근 현황과 함께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될 수 있다.

〈표 IV-17〉 국가별 조세지출 보고서 비교 요약

국가	목적/용도	법적요건	예산과의 관계	빈도	측정방법	조세지출 비율		조세지출 주요항목	세목별 조세지출 <sup>1)</sup> (2004 또는 2004~05기준)	
						연도	비율		세목	금액
호주	직접지출과 대비하여 조세지출의 유용성 평가를 용이하게 함. 조세체계의 설계에 기여, 대중토론에 정보를 제공	법적으로 필수임	별도의 정부 문서이지만 예산안에 요약은 들어감	매해 작성됨	발생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2001~02	12.4%	1.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39%) 2. 개인 및 신탁을 위한 자본이득세 할인(12%) 3. 가족세제 혜택(6%)	개인소득세	11,415
						2002~03	11.1%		법인소득세	3,103
						2003~04	11.7%		퇴직제도	15,193
						2004~05	11.7%		부가급여	2,529
캐나다	연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분석, 예산을 세우기 앞서 참고자료로 사용	법적 의무는 없음	예산과정과는 연계되지 않음. 다만 예산을 세우기 앞서 참고자료로 사용	매해 작성됨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2001	22.6%	1. 기본인적공제(17%) 2. 지방으로 소득이전(11%) 3. 허가된 연금플랜(8%)	개인소득세	104,708
						2002	21.5%		법인소득세	18,954
						2003	24.1%			
						2004	23.8%		부가가치세	16,580
독일	보조금/지출 절감	법적으로 필수임	'보조금보고서'라 불리는 예산안의 일부임	2년마다 작성됨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2001	3.0%	1. 주택소유장려제도-기본수당 등(29%) 2. 주택소유장려제도-유아수당(14%) 3. 야근수당에 대한 소득공제(7%)	_2)	
						2002	3.2%			
						2003	3.2%			
						2004	3.4%			
영국	매해 예산 관련 논의/토론을 용이하게 함	법적 의무 조항은 없으나 지출 위원회에서 권장함	예산과정과 관계없으며 예산서에 첨부되지도 않음. 다만 세수의 "가을 보고서"상 통계적 첨부물의 일부임	매해 작성됨	발생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2001~02	30.7%	1. 자본수당(13%) 2. 지정된 연금가입자(10%) 3. 주택판매 이득금에 대한 공제(9%)	소득세	68,030
						2002~03	31.9%		법인세	5,720
						2003~04	31.7%		소득세&법인세	27,030
						2004~05	32.1%		부가가치세	50,200
미국	세계개혁 틀짜기, 적자 절감	법적으로 필수임	매년 예산서의 일부로 작성됨. 하지만 예산과정에 통합되지 않음	매해 작성됨	세수손실법, 직접지출등가법, 현재가치법, 현금기준	2001	21.8%	1. 연금에 대한 순공제액(14%) 2. 고용주제공의료보험혜택공제(14%) 3. 소유주택 Mortgage 이자공제(9%)	법인세 및 소득세	814,832
						2002	23.7%			
						2003	23.1%			
						2004	21.8%			

주: 1) 세목별 조세지출액의 단위는 호주는 백만호주달러, 캐나다는 백만캐나다달러, 영국은 백만파운드, 미국은 백만달러임.

2) 독일의 경우 세목별 조세지출액에 대한 자료 불비로 생략함.

자료: Brixi, H, Valenduc, C and Li Swift, Z(2003)를 가공함.

〈표 IV-18〉 조세지출보고서상 포함내용 요약

국가	정의 및 보고서상 포함 항목	적용범위		분 류
		세 목	포함 정부	
호주	조세지출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사용되며 '기준(norm)' 개념이 적용	개인소득세, 퇴직연금세, 부가급여세, 사업세 및 소비세	연방정부 (중앙정부)	주요 경제적 기능별; 납세자 유형별; 연관된 특정 기준조세제도별
캐나다	'기준'에 대해 매우 협소한 정의 사용. 즉, 조세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인 요소만이 기준조세의 부분으로 인정. 보고서는 구조적 항목일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항목인 조세 특혜를 포함하고 있음.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방정부	(1) 개인소득세: 예산상 기능별 (2) 법인소득세: 산업별, 세부 산업부문별 (3)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조세환급 및 세액공제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
독일	직접 보조금과 조세특혜를 모두 포함한 '보조금 보고서'를 사용	소득세, 법인세, 부유세, 사업세, 매상세, 기업세, 보험세, 자동차세, 소비세, 복권세, 재산세, 상속세	연방정부	산업부문별 그리고 이러한 부문 안에서 세목별로 더욱 세분화
영국	모든 조세감면(tax relief)은 구조적 감면, 비구조적 감면 및 양자의 경계에 있는 감면 등 3가지 범주에 포함됨.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인지세, 국가 보험 기부금, 부가가치세	중앙정부	조세지출, 구조화된 세액경감 또는 조세지출과 구조화된 세액경감 요소를 모두 가진 세액경감으로 구분
미국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우대적 예외 조항으로 규정. 보고서는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조세지출을 다루고 있음. 기준조세체계는 정상적 조세기준과 관계 법령 기준(reference law baseline)을 포함.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사회보장 기부금	연방정부	예산상 기능별

자료: Brix, H, Valenduc, C and Li Swift, Z(2003)

##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내용과 형식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의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세지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각국의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호주, 캐나다의 경우 기준조세로부터 벗어나서 특정 행위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독일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어떤 지원의 효과가 특정 개인, 활동 또는 제품을 지원 또는 촉진하는 것으로 공공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대안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어떤 조세제도를 비교기준으로 설정할 때 이 비교기준에 대한 예외적 우대조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액의 추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수손실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세수손실법의 경우, 모든 다른 요소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조세지원의 존재에 따른 세입의 감소액으로 조세지출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조세조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하나의 조세지출 항목의 변화가 기타 항목의 변화를 유발한다면 전체 조세지출 추정치 역시 바뀔 수 있다. 또한 해당 조세조항의 폐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가능한 행태변화,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 또는 특정 조세지원의 폐지로 인한 거시경제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른 세입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정의에 대한 국가간 차이 및 조세지출 추정액 계산 방법인 세수손실법의 한계로 인해 조세지출보고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각국의 조세지원을 직접 기능별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 왜냐하

면 각국의 조세지출 정의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인해 조세지출보고서상 포함되는 조세지원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각 조세지원 항목을 범주화한 양식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고서상 조세지출액의 단순 합산 금액으로 국가간 조세지출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조세지출 항목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세수손실법으로 계산된 개별 조세항목 추정치의 합계는 무의미한 총계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에 대해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는 작업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기능별 비교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개별국가의 조세지출 비율은 해마다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조세지원은 대체적으로 직접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모면에 있어 최대 조세지출 항목은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캐나다의 경우 기본 인적공제가, 독일의 경우 주택소유 장려제도가, 영국의 경우 자본수당이, 일본의 경우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고 있었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제화를 앞두고 지금까지 논의한 OECD 주요회원국의 조세지출보고서상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 추정방법 및 보고서상 표현양식을 기초삼아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적합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조세체계에 적합한 기준조세제도에 대한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될 항목들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조세지출보고서상 표현양식을 재점검할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액 추정방법을 보완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기백 · 연태훈, 『조세지출의 합리적 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1999.
- 박기백 · 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임주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 日本 經濟産業省, 『産業稅制』, 平成 13~17年度版.
- 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5.
- \_\_\_\_\_,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ustralia's Taxes*,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6.
- Brixi, H. P., C. M. A Valenduc, and Z. L. Swift(eds.), *Tax Expenditures - Shedding Light on Government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 Lessons from Developed and Transitional Economies*,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03.
-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05.
- Germany,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Entwicklung der Finanzhilfen des Bundes und der Steuervergünstigungen für die Jahre 2001 bis 2004*,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OECD, *Tax Expenditure : Recent Experiences*, Paris, 1995.
- \_\_\_\_\_, *Revenue Statistics*, 2004, 2005.
- United Kingdom, *Tax ready reckoner and Tax reliefs*, HM Treasury, 2002~2005.
- United States,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03~2006.
- <http://www.ag.gov.au/cca>.
- <http://www.fin.gc.ca>
- <http://www.wahlalternative-hessen.de/literatur/literaturserver/subventionsbericht.pdf>
- <http://www.hm-treasury.gov.uk>
- <http://www.budget.gov/budget>

세법연구 06-03

##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

2006년 8월 28일 인쇄

2006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박명호·정희선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관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25-0

---

\* 잘못 만들어진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